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정보인권 보고서 발간 기념 공동학술대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회는 그 동안 정보인권 증진 사업을 기획 사업으로 채택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핵심 작업으로서 정보인권 보고서 발간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2009년부터 준비하여 4년여 동안 작업하고 수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끝에 2012년 말 정보인권 보고서 채택을 의결하였고, 올해 1월 정보인권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정보인권 보고서는 그 동안 개별적인 기본권과 단편적인 사례 중심의 논의를 탈피하여 정보통신기술(ICTs)의 발달을 인권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재구성한 국내·외 최초 보고서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면서 정보인권에 대한 관심은 뜨거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해외 인권 관계자 여러분들도 위원회의 정보인권 보고서 발간 작업에 대해서 수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왔으며, 국내에서도 정보인권 보고서를 공개한 후 보고서 다운로드 횟수가 1,000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원회가 그 동안 작업했던 정보인권 보고서에 대하여 처음으로 국내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평가와 우리나라 정보통신정책에 대하여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보인권 보고서가 다루지 못하여 미흡했거나 우리나라 정보통신정책 방향에 있어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각계 전문가분들께서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면 정보인권 보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수고해 주신 한국인터넷법학회와 동국대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또한 정보인권 보고서 발간을 위하여 초안 작업에 힘써주신 전문가들과 다시 한번 바쁜 일정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6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 병 철**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6월 초부터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원전비리사건으로 인하여 전력수급에 차질을 가져오면서 냉방도 원활하게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해와 달리 유난히 빨리 찾아온 더위 속에서도 우리 학회는 인터넷 시대에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가는 정보인권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는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의 비교법문화연구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 학술대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정보인권 보고서를 기념하여 개최되는 것으로 정보프라이버시권,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권과 정보문화권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인권의 보장을 위한 과제가 주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한 이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번 주제는 21세기 정보의 시대에 국민의 정보인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을 담은 보고서의 내용을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짚어보는 것입니다. 고도의 정보사회에서 인터넷상 여러 인권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 상당한 의미를 갖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향후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정보인권분야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개최하면서 여러 부분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학술대회와 관련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소와 인원을 제공해 주신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박민영 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하며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2013년 6월 14일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김 상 겹

● ● ● 프로그램

- 일시 : 2013. 6. 14. (금) 15:00 ~ 18:00
- 장소 : 동국대학교 모의법정

시 간	내 용	진 행
14:30~15:00	접수 및 등록	
15:00~15:05	Opening 및 내·외빈 소개 장교식 (건국대 교수)	사회: 장교식 교수 (총무이사)
15:05~15:15	축 사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15:15~15:20	개 회 사 김상겸 (인터넷법학회 회장)	
15:20~15:40	정보인권 보고서 발간 배경 및 의의 발표: 안석모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좌장: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과장)
15:40~16:10	정보프라이버시권의 이슈와 과제 발표: 백윤철 (대구사이버대 교수) / 토론: 이광진 (서울디지털대 교수)	
16:10~16:20	Coffee Break	
16:20~16:50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보장을 위한 방향 설계 발표: 장용근 (홍익대 교수) / 토론: 문재태 (동국대 박사)	좌장: 강현호 (성균관대 교수)
16:50~17:20	정보접근권 확보와 정보문화향유권의 확대 발표: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 토론: 권현영 (광운대 교수)	
17:20~17:55	총 합 토 론 토론: 박민영 (동국대 교수) 이재삼 (가천대 교수) 윤철한 (경실련)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좌장: 채우석 (송실대 교수)
17:55~18:00	정리 및 폐회	사회: 장교식 (건국대 교수)

■ 정보인권 보고서 발간 배경 및 의의 1

발표: 안석모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 정보프라이버시권의 이슈와 과제 15

발표: 백윤철 (대구사이버대 교수)

토론: 이광진 (서울디지털대 교수)

■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보장을 위한 방향 설계 39

발표: 장용근 (홍익대 교수)

토론: 문재태 (동국대 박사)

■ 정보접근권 확보와 정보문화 향유권의 확대 65

발표: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토론: 권현영 (광운대 교수)

■ 정보인권 보고서 발간 기념 공동학술대회 종합토론 89

- 토론: 박민영 (동국대 교수) / 91
- 이재삼 (가천대 교수) / 93
- 윤철한 (경실련) / 95
-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 97



정보인권 보고서 발간 기념 공동학술대회

정보인권 보고서 발간 배경 및 의의

발표: 안석모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정보인권 보고서 발간 배경 및 의의



안석모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1. 「정보인권 보고서」 추진 배경 및 목적

- 고도의 정보화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생활의 편리함과 커뮤니케이션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의 증가, 감시와 통제 기술의 증가, 정보 접근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보화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예를 들자면, 전세계 유래없는 개인식별코드인 주민등록번호코드에 의한 개인정보의 통합과 관리, 거의 매일 터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영상정보와 생체정보의 축적, 미국의 프리즘 사건과 같은 국가에 의한 통신감청의 증가, 국정원 댓글사건, 국가에 의한 정보통신 심의,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 논란과 악플에 의한 자살, 사회적 약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 차별과 정보격차, 저작권을 둘러싼 정보의 생산·유통·소비 구조의 변화에 따른 접근의 범위와 권리 문제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정보화 선진국으로서 국제인권규범 및 정보인권 관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보고서로서,
 - 정보사회의 역기능으로 발생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학계나 시민단체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정보인권 개념이 점차 확대되어 정보소통의 권리(Communication right),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등으로 확대되어 폭넓게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정보인권의 범위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 또한, 위원회에 정보인권 관련 상담 및 진정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위원회의 정보인권 관련 법제도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결정과 침해 및 차별에 대한 구제 결정들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사회의 정보인권 현황을 점검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정보인권에 대한 접근범위와 방향을 재설정하고 조정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 우리나라는 엘빈토플러의 주장처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정보화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인권에 대한 개념 정립과 유형별로 균형감각을 갖는 전체적인 보고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들이 온라인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인권 가치 실현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보화 선진국으로서 균형 잡힌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 이에, 본 보고서를 통하여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 인권규범에 부합하고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맞는 입법화 체계의 초석을 마련하며, 관계기관에 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이행을 독려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정보인권에 대한 정책 방향과 기준을 제한함으로써 인권국가로서의 실천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와 제29조 제2항에 의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2. 정보인권 보고서 집필 사업 추진 경과

- 정보인권 증진사업 추진(2009년)
- 정보인권 보고서 추진 계획안 마련(2009년 4월)
- 정보인권 전문가 간담회 추진(4회, 2009.5.13, 5.28, 6.17, 7.27)
- 정보인권 보고서 집필진 구성(2009.7.27.)
- 정보인권 특별전문위원회 구성 및 보고서 발간 계획안 설명(2009.10.15.)
- 정보인권 보고서 집필자 초안 보고(2009.12.31.)
- 정보인권 특별전문위원회 보고서 자문(2010.2.3.)
- 정보인권 보고서 집필자 간담회 실시(2010.3.3)
- 정보인권 보고서 수정안 및 사무처 안 마련(2010.3.30.)
- 상임위원회 심의(2010년 제11차, 2010.4.8.)
- 전원위원회 안건 상정(2010년 제12차, 2010.7.12.)
- 전원위원회 안건 재상정(2010년 제14차, 2010.8.23.)
- 정보인권 보고서 수정발간 계획안 작성(2011.5.9.)
- 정보인권 특별전문위원회 논의(2011.5.25.)
- 정보인권 보고서 집필진 간담회 실시(2011.6.15.)
- 정보인권 보고서 집필자 수정 초안 제출(2011.12.30.)
- 정보인권 보고서 보완 및 수정(사무처안 마련, 2011.3.20.)

- 제7차 전원위원회 논의 결과 재상정 의결(2012.3.26.)
- 정보인권의 개념 및 유형 보고(2012.4.12.)
- 제12차 아셈인권세미나 개최(2012.6.27-29)
- 정보인권 포럼회의의 구성 및 논의(10.15, 10.18, 11.13)
- 정보인권 보고서 집필진 수정안 제출(11.19) - 집필진 재구성
- 정보인권 보고서 보완 및 수정(사무처안 마련, 2012.11.26.)
- 정보인권 보고서 전원위 논의 및 의결 (2012.12.10.)
- 정보인권 보고서 발간(2013.1.)

3. 주요 내용

- 정보인권 보고서는 정보인권의 개념 및 유형에 관한 논의와 정보인권의 유형별 이슈를 정리하고, 국·내외의 최근 동향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위원회 진정 및 상담 사례와 권고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정보인권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정보인권 개념 및 유형 정리를 위하여 정보인권, 정보기본권과 관련한 논문을 검토하여(278건), 학자들의 논의사항을 정리하였음
- 또한 정보인권 개념 및 유형에 관한 논의를 위하여 정보인권 포럼을 구성하고, 3회에 걸쳐 포럼회의를 진행하였으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념 및 유형을 정리하고, 정보인권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 본 보고서에 반영하였음
- 본 보고서는 정보인권의 유형을 여러학자들이 비교적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정보프라이버시권,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정보문화향유권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나열하여 기술하였음

1) 정보인권의 개념 및 유형

- “정보인권(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and Human Rights)”이란 정보통신기술에 의하여 디지털화된 정보가 수집·가공·유통·활용되는 과정과 그 결과로 얻어진 정보가치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고 자유롭고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말함

-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지배는 그 정보주체에게는 인격의 존엄과 자유의 불가결한 조건이 되지만, 동시에 정보나 기업이 그 개인정보를 지배하는 경우 당해 정보주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의 기초가 될 수 있음
- 활자 매체를 통한 정보가 디지털 정보로 전환되면서 전통적인 정보 개념과 유통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도 정보의 범위를 디지털화된 정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본 보고서의 정보인권에서 다루는 범위는 디지털화된 정보로 한정하도록 함
- 정보인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등)으로 해석할 경우 현재 헌법 체계와 구분하기 어렵고, 그 체계 내에 포섭되어 정보인권 측면만의 독특한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바라보는 정보인권은 디지털 혁명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정보사회의 특징에 기초하여 디지털화된 정보가 생산되어 폐기될 때까지 정보의 생산주기에 따라 발생되어지는 현상을 인권적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함
- 정보인권의 유형에 대한 분류는 합의된 기준이 없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향후 또 다르게 포섭될 수 있는 현상이나 권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보인권의 유형을 고정화하여 정하지 않고, 현재 정보인권을 분류하고 있는 여러 학자들이 비교적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정보프라이버시권,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정보문화향유권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나열하여 기술하였음

2) 유형별 정보인권 현황과 쟁점사건

(1) 정보프라이버시권

- 정보프라이버시권이란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프라이버시 침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유통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과 이에 대한 통제 문제로 귀결됨
- 정보프라이버시권의 핵심을 이루는 개인정보자기통제권의 내용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권, 동의 철회권, 정정 및 삭제 요구권,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 확인 및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열람·확인 요구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세계인권선언 제12조를 비롯한 많은 국제규약 및 기준에서 프라이버시에 관한 원칙¹⁾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정보프라이버시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은 많은 선진국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음
- 2012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2차 ASEM인권세미나에서도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인권보호에 기초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와 효율적 해결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치, 정보보호관리자 도입,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이행, 개인정보 보호 법률 제정 및 국제 협력 증진을 권고한 바 있음
- 최근 국제사회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뚜렷이 대비되는 두 가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개인정보를 가급적 폭넓게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정부기관(특히 수사기관)과 사업자들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가능한 폭넓게 보호받고자 원하는 시민 및 소비자 사이에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음
- 정보프라이버시권의 제도와 관련한 이슈로는 영상정보처리장치(CCTV)의 설치·이용 남용, 지문·DNA 등 생체정보의 수집·이용 확대, 성범죄자,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 통합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잦은 해킹사고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신상털기, 인터넷 패킷감청 등 통신감청의 급증, 디지털 증거수집을 위한 포괄적 압수·수색, 빅데이터의 활용과 잊혀질 권리 등이 있음²⁾

(2)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란 모든 인권선언과 헌장에서 핵심적인 위상을 가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온라인 공간이라고 하는 범위에 한정하여 발생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을 말함
-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이 국민여론과 현실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은 계속해서 커져 가고 있으며, 선거 및 포털사이트 토론광장의 영향력은 크게 증대되고 있음
- 하지만, 인터넷 댓글 문화가 역사상 전례 없는 언론자유를 구가하게 하면서도 타인의 인격

1) 유럽개인정보보호협약, 유럽 개인정보보호지침,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APEC 프라이버시원칙, ILO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행규약 등

2) 이에 대한 사례로 옥션, 하나로텔레콤, GS칼텍스 등의 개인정보 유출, 구글 스트리트 뷰의 초상권 침해, 짐질방 목욕탕 등의 CCTV 모니터링, CCTV, 전자메일 등을 이용한 근로자 감시, 강력범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주변 가족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심층감시기법을 이용한 KT의 맞춤형광고, 전자우편에 대한 포괄적 압수수색, 공항 검색대의 전신 투시 스캐너 도입 등이 있음

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례를 양산하면서 인터넷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를 불러 일으켰음

- 우리 사회 전반에는 표현의 자유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표현 영역에서는 사전 또는 사후심의가 일반화되어 있음
- 표현의 자유는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유럽인권협약, 인터넷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자유에 관한 선언 등 모든 인권선언과 현장에서 핵심적인 위상을 가지는 인권임
-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규범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똑같이 중요한 인권으로서 존중되고 보장을 받고 있음
- 물론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국가안전보장, 법질서의 유지 그리고 타인의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지만 다른 표현과의 경쟁을 통해 그 해악이 시정될 수 있을 때에는 정부의 개입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원리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음
-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이슈로는 인터넷에서의 불법정보심의제도,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삭제조치 및 임시조치제도, 익명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실명제 등이 있음³⁾

(3) 정보접근권

- 정보접근권이란 정보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정보의 자유 또는 알권리의 기초가 되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라고 할 수 있음
- 현재는 자유로운 의사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서 가능하며,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고 판결(헌재 1991.5.13.판결 90헌마133)함
- 국민에게 정확한 공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의 실질화에 기여하며, 국가로 하여금 정보의 편재로 인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소외의 문제를 시정하도록 하는 법적 토대가 되도록 함

3) 이에 대한 사례로 미네르바사건, 인터넷포털의 명예훼손책임 인정사건, 성형시술 부정적 평가 댓글 사건, 문화방송 PD수첩 광우병 위협성 보도 사건, 신문광고중단 불매운동 사건, 국제청 내부직원 온라인 게시판 비판 글에 대한 파면결정 등이 있음

- 정보접근권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제도나 조치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는 소극적 권리(정보방해제거청구권)와 국가가 보유하는 정보를 공개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정보공개청구권),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정보격차해소청구권)로 나눌 수 있음
- 세계인권선언 제19조, 유럽의회의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과 정보의 자유에 관한 권고”, 암스테르담조약 등에서 알권리, 정보접근권, 정보공개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각국은 정보공개 및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정보격차와 웹접근성 해소를 위한 법률제정 및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음
- 정보접근권과 관련한 이슈로는 장애인 웹접근성 보장과 웹표준화, 아날로그방송 송출중단과 디지털 방송의 전환으로 저소득층 등의 정보접근권 침해가능성과 정보격차 우려가 있으며, 대법원의 공인인증서 관련 판결(인터넷 뱅킹시 MS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쓸때만 접속이 가능하는 것이 전자서명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등이 있음
- 또한 EU는 인터넷 접속권을 표현의 자유와 동등한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핀란드는 인터넷 접속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법제화 하는 등 인터넷 접속의 기본권과 인터넷 망중립에 관하여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BBC 조사(2010.3.)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96%가 인터넷 접근권이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정보문화향유권

- 정보문화향유권이란 지식과 정보, 문화콘텐츠에 대한 접근과 이용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러한 접근과 이용을 국가와 사회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청구권적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형성 과정에 있는 권리임
-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에 포함된 과학기술과 문화에 대한 권리 안에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향유하며 과학적 진보와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국제사회는 국가가 그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국민에게 충족시켜주는 프로그램적 권리로 인식되어 왔으며, WTO 트립스 협정을 계기로 2001년 사회권 규약에 지적재산권과 인권에 관한 성명서를 채택하였음
- 현재는 저작권의 세계화, 지적재산권과 무역의 연계, 디지털 환경에 대응한 저작권 체계의

변화라는 상황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권적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센티브 회의론을 제기하였고, 사회권위원회에서도 지적재산권과 정보문화향유권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정보문화향유권과 관련된 이슈로는 한-미, 한-EU FTA 체결, P2P 서비스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범위, 기술적 보호조치, 저작권 침해 삼진아웃제,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형사처벌 및 과도한 손해배상, 게임셋다운제 등이 있음

3) 정보인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1) 민원·상담·진정 추이 및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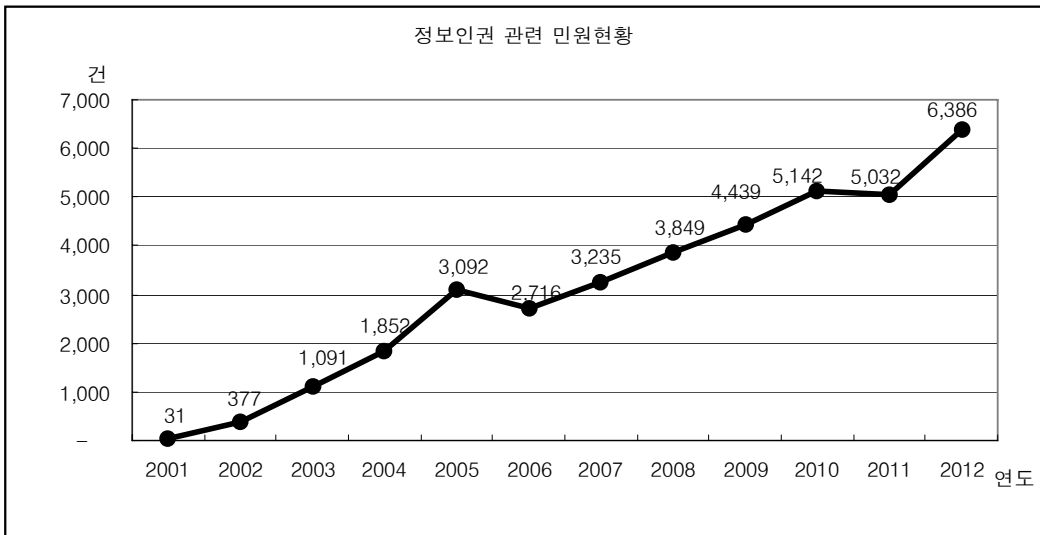
-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정보인권 관련 전체 누적통계는 약 3만 7천여 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정보인권 관련 진정·민원·상담·안내는 2001년 31건 이후 2012년말 6,386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2012년 기준 최근 7년간 민원현황도 2006년 2,716건에서 2008년 3,849건, 2010년 5,142건, 2012년 6,83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에 비하여 2.5배 이상 증가하였음
- 유형별로는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정보프라이버시권 관련 처리가 31,749건으로 전체의 8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정보접근권,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정보인권과 관련된 단어별 진정 및 상담사례가 가장 많은 것은 CCTV,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인 것으로 나타남.

〈표 1〉 유형별 정보인권 관련 민원처리 현황

2012.12.31. 기준(건, %)

연도	정보프라이버시	온라인에서의 표현의자유	정보접근권	정보문화향유권	합계
2001	30	-	-	1	31
2002	315	20	42	0	377
2003	904	55	129	3	1,091

연도	정보프라이버시	온라인에서의 표현의자유	정보접근권	정보문화향유권	합계
2004	1,518	99	229	6	1,852
2005	2,665	139	271	17	3,092
2006	2,332	140	237	7	2,716
2007	2,719	191	312	13	3,235
2008	3,261	182	374	32	3,849
2009	3,854	187	371	27	4,439
2010	4,357	266	482	37	5,142
2011	4,235	220	545	32	5,032
2012	5,559	279	512	36	6,386
합계	31,749	1,778	3,504	211	37,242
비율	85.3	4.8	9.4	0.6	100.0



(2) 주요 권고

- 정보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한 위원회의 중요 권고는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한 국가기관의 감청과 관련한 의견표명, CCTV에 의한 사생활 침해 및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권고, 국내공항 전신검색장비 설치 금지 권고, 기업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 주민등록번호·전과기록의 유출,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등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절차 및 범위에 관한 권고, 신체정보의 수집, 피의사실 공표 등이 있음
-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인터넷 게시관 실명제 관련 정치관계법 개정 권고, 사이버모욕죄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견표명, 선거 UCC물에 대한 운영지침 개선 권고,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의견제출, 정보통신심의제도 개선 권고 등이 있음
- 정보접근권과 관련한 위원회 중요권고는 주로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의 불응을 통한 알권리 침해, 정보의 접근 제한 및 규제, 정보의 관리부실 폐기로 인한 침해 등이 있으며, 차별사건으로는 장애 병력에 의한 정보접근의 제한, 신분에 따른 정보접근 제한, 장애인에 대한 웹 접근성 보장 권고 등이 있음

4) 정보인권 증진을 위한 제언

(1) 정보프라이버시권의 보호 강화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통일
- 개인정보보호 행정체계의 개편
-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있어 인권침해요소 최소화
- 생체정보의 수집·처리원칙 마련 및 오·남용 방지
- 강력범죄 피의자의 가족, 친지 등 사생활 보호 장치 마련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의 투명성 보장장치 마련
- 실명제 기반 개인정보 처리 관행 개선 및 주민등록번호 체계 재정비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개인정보보호 기준 마련
- 인터넷 패킷감청장치(DPI)의 제한 및 기준·절차 등 마련
-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의 개선

-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 원칙의 재정립

(2)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강화

- 인터넷에서 불법정보심의제도의 개선 및 자율규제 원칙 적용
- 진실을 말할 자유의 보장 강화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삭제조치 및 임시조치제도의 개선
- 익명표현의 자유 보장의 강화
- 정보프라이버시권과 충돌의 경우 합리적 해결방안 확대
-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제한 원칙을 준수

(3) 정보접근권의 강화

- 정보공개청구권 보장의 확대
-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 대책의 수립
- 인터넷 접속권의 보장 확대와 망중립성 확보

(4) 정보문화향유권의 강화

- 정보문화향유권 개념의 현실화
- 정보문화향유권을 침해하는 현행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실시



정보인권 보고서 발간 기념 공동학술대회

정보프라이버시권의 이슈와 과제

발표: **백윤철** (대구사이버대 교수)

토론: **이광진** (서울디지털대 교수)

정보프라이버시권의 이슈와 과제



백윤철* (대구사이버대 교수)

I. 정보주권, 정보인권 그리고 헌법

18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러 확립된 기본권(fundamental human rights)이라든가 자유(freedom)의 보장이라는 근대법 이념이 더욱 추진되어, 21세기 인터넷시대에는 개인의 정보주권자로서의 위치와 그 실질적 평등이 지도원리가 될 것이다. 인터넷세계에 있어서는 ‘소비자’라는 관념 그 자체가 정보관계적으로 변경되고, 바뀌어서 등장하는 것이, 있어야 할 모습으로서는 정보주권자(informational sovereign)이다. 이 의미는, 인터넷세계에 있어서는, 정보의 홍수현상이 더욱 발달되고, 그 중에서 효율적으로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여 취득, 전달하는 능력이 사람에 따라서 크게 다르며, 이념으로서는 정보주권자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는 정보처리능력에서 열등한 정보약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의 홍수현상은 인터넷세계의 시민(netizen)을 삼켜버리고, 편중된 방향으로 netizen을 흘려 넣을 위험이 있다. 여기에서의 정보처리능력이라 함은, 그러한 정보의 홍수현상에 저항할 만큼의 지력과 자율성을 의미한다. 개인의 존중에 필요한 것은 정보의 홍수현상이 아니라, 개인이, 필요로 하는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를 알고, 제어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시민(netizen)이 이 의미의 ‘정보기본권’(fundamental right to information) 내지 정보인권¹⁾을 갖기 위해서는, 각자가 올바른 정보처리능력을 몸에 붙일 권리와 의무를 가질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러한 정보기본권 내지 정보인권이란 실정법적 개념이 아닌데, 그 개념에 대한 정의를 하면 우선 여기서 정보란 사전적 의미로 사물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나 자료를 의미하고, 정보기본권에서 정보란 사전적 의미에 기본권 주체에 관련된 정보이고, 이러한 정보는 수집, 가공, 수정, 유통, 처리, 활용 등에 관한 기본권 주체가 이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 정의하고자 한다²⁾. 그 의미에서 소비자교육과는 다

* 대구사이버대학교 교수·법학박사

본 발표문은 2013년 정보인권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인용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보완한 논문임을 밝힌다.

1) 인권위원회에서는 정보기본권이라는 용어보다는 정보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 정보인권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13. 10면 참조.

른, 인터넷시민적 교육(netizenry education), 정보주권자(information sovereign, holder of (fundamental human) rights to information)에 적합한 자율성이 중요하다. 그와 같이 자율성, 주체성을 보지하는 인터넷세계의 주민netizen이, Net상에서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주장하고, 행동한다면, 그곳에 원시성운과 같은 대단한 에너지를 갖는 정보사회가 창조될 것이다. 모든 발신의 근원을 포함시킨 Net상의 정보량은, 진정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하는 것이다. 정보에 관한 자유의 정도는 정말로 ‘폭발한다’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과 헌법의 문제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사이버공간이 영토, 영해, 영공에 이은 제4의 영역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관할권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인터넷은 국경이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인터넷과 기본권 문제로서 제기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문제, 교육권, 소비자의 권리, 재판청구권문제, 그리고 전자적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논의되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의 자유 및 인터넷투표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선거권과 국민투표권, 인터넷정당 등이 문제로 제기된다³⁾. 일반적으로 전자민주주의(teledemocracy)란 전자매체나 인터넷을 통한 국민의 직접·간접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최근에 이러한 전자민주주의는 인터넷선거 내지 사이버선거나 전자투표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인터넷선거란 인터넷 통한 선거프로그램을 통하여 투·개표를 하는 등 일련의 선거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인터넷선거의 장점으로는 시간·장소의 한계 극복, 인적·물적 선거관리비용의 절감, 투표참여의 제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투표편의 제공, 해외부재자(재외국민 포함) 투표용이, 개표의 신속·정확 등이 있는 반면에, 보안성(해킹), 사용자 확인 작업의 정확성, 개인정보보호, 초기 비용의 과다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순차적 도입과 법·제도의 개혁을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한다⁴⁾. 그리고 인터넷과 통치권의 문제는 새로운 통치권 행사라는 인터넷거버넌스의 문제가 제기된다. 과거의 헌법과 통치권의 문제는 현실국가를 기초에 두고 있지만, 인터넷과 통치권의 문제는 새로운 논의를 제기하게 된다. 이러한 논의에 대하여 인권위원회에서는 정보프라이버시권,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정보문화향유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정보프라이버시권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⁵⁾.

3) 백운철 외1, 헌법학, 한국학술정보, 2012., 참조.

4) 박기수, 사이버헌법론, ‘사이버 선거에 관한 소고’, 조세통람사, 2001., 183-223면 참조.

5) 백운철 외2인, 인터넷법학, 한국학술정보(주), 2012. 30-32면 참조.

II. 정보프라이버시 법·제도 현황

1. 정보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개념 정의

인권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정보프라이버시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정보프라이버시권이란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한다. 이러한 정보프라이버권과 전통적 프라이버시와 차이점 있다고 하는데, 그 근거로 정보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사적 생활의 자유 즉 신체, 공간, 의사결정에 대한 간섭의 배제를 강조해온 전통적 의미의 프라이버시와 차별성을 갖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은 과거에도 논의되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어보인다⁶⁾.

그리고 위 보고서에서는 정보프라이버시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학계에 서와 판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용어 사용에 혼란을 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이루어진 컴퓨터의 발달로 개인의 다양한 정보가 컴퓨터에 저장되게 되었다. 축적될 수 있는 데이터량이나 그것을 인출하기 위한 속도도 비약적으로 향상되어 전국민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기초로 원래 혼자있을 권리라는 소극적인 권리였던 프라이버시권은 자기정보 내지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개인의 권리라는 적극적인 위치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자유로이 인출되어 악용될 수 있다는 걱정을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어 왔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의 누설·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프라이버시권은 보다 넓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 확대된 권리는 자신과 관계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권리(individual right to control the circulat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oneself)로 정의되고, 이것이 바로 개인정보자기통제관리권, 개인정보자기배권, 개인정보관리권, 또는 개인정보자기통제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⁷⁾ 등으로 불리게 되었다⁸⁾. 이러한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기초로 하여 우리 나라의 개인정보 보호현

6) 정보인권보고서, 전게서, 19-20면 참조.

7) 이하에서는 이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 한다.

8)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에 대하여 학설이 헌법 제10조설, 제17조설 등으로 분류되나, 헌법 제10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를 통합적으로 해석하여 그 근거를 도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상세한 것은 줄고,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법조, 2002. 5. 참조.

황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당히 앞서기는 면도 있고, 늦은 면도 있다. 따라서 세계적인 조류로서의 전자정부 하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제도를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컴퓨터를 이용한 대규모의 정보처리가 일상적으로 행하여짐으로써 네트워크를 통해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면,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는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통일성 있게 다루는 것이 불가결하게 되었다⁹⁾.

2.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1) 내용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현대 정보사회를 눈부시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개인정보보호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노력을 계속해 왔지만,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앞에서 본 것처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나뉘어 시행되어 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련법만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어려웠다. 그래서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통합된 단일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제17대 국회는 노회찬의원안과 여·야안 등 제출된 여러 개인정보보호법안을 놓고 논란만 벌이다가 임기의 종료로 폐기하였다¹⁰⁾. 그러다가 개인정보의 대량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제18대 국회는 다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하여 논의를 시작하였고¹¹⁾, 그 결과 국회의 여·야안과 정부안 등이 절충되어 단일화된 개인정보보호법안이 2010년 가을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고, 2011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11년 9월 말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까지 망라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통합법으로 시행되는데,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9) 본 논문에서는 인권위보고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보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혼용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 10) 제17대 국회에서는 노회찬 의원안, 여당안(당시 이은영 의원안), 야당안(당시 이혜훈 의원안)이 각각 발의되었고, 변재일 의원은 이 법안들을 통합한 합의안을 추진하였다. 당시 이 법안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세부 정책과 추진체계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지만 개인정보감독기구가 특정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다.
- 11) 제18대 국회에서는 이혜훈 의원안, 변재일 의원안, 정부안(행정안전부) 등 3개 법률안이 제출되어 논의되었다.

먼저 같은 법의 적용대상은 제2조에서 공공·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이다. 즉 헌법 재판소와 대법원 및 국회 등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그리고 비영리단체 등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모두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그 동안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적용을 받지 않았던 사각지대를 해소될 것이다.

그 다음은 개인정보가 기록된 문서와 관련하여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외에도 오프라인상 수기(手記) 문서까지도 개인정보의 보호범위에 포함됨으로써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는 보호의 범위에 속하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과거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련법들과 달리 제7조와 제8조에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개인정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사무국을 두도록 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 15인은 입법부·사법부·행정부에서 각 5인씩 구성하도록 되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기준을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 각 단계별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령을 통하여 개인에게 부여된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한 고유식별번호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그 처리를 금지하고, 별도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 의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도록 제2조에 규정하였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등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외의 방법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영상장치에 의한 개인정보의 문제도 규정하고 있는데, 제25조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기기 운영자에게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예방 등 특정 목적으로만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법 제33조에서는 개인정보의 침해로 인한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를 도입

하였다. 이는 개인정보의 침해로 인한 피해의 경우 원상회복 등 사후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여 분석하고 이를 조기에 제거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등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는 민간부문에서는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공공부문에서는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우려가 큰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4조에 개인정보의 유출사실에 대하여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때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법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하고 있다. 즉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열람청구권, 정정·삭제 청구권, 처리정지 요구권 등을 부여하고, 그 권리행사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주체가 보다 용이하게 자신의 정보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 개인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옮겨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개인정보분쟁조정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면서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그 권한과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 분쟁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게 하고, 개인정보의 피해가 대부분 대량·소액 사건인 점을 고려하여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법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개인정보로 인한 분쟁사건에서 동일·유사한 개인정보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있어서 준법정신과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단체소송의 남발을 막기 위하여 단체소송 전에 반드시 집단분쟁조정제도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단체소송의 대상을 권리침해행위의 중단·정지청구소송으로 제한하였다.

그 외에도 법 제62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신고 접수 및 업무처리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의 침해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였는데, 개인정보의 불법유출 등 침해행위에 대하여 형사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대폭 강화되었다.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2011년 9월 말부터 시행됨으로 인하여 과거보다 정보주체

의 권리를 강화하였고,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의무가 훨씬 강하게 부과되고 있으며, 분쟁해결수단도 집단분쟁조정제도나 단체소송 등이 도입됨으로써 분쟁처리에 있어서 효율성이 강화되었다. 그 외에도 제재와 처벌이 강화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비판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으로 말미암아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에 없어졌다고 생각하였으나,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개별법이 폐지되지 않아 통합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이 되고 있다. 빠른 시일 안에 이러한 개별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형적이 법체계는 국회의원과 정부부처 이기주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중에 중요한 업무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심의 의결권만 가지고 있어 권한이 없는 그런 허울만 좋은 장관급 위원회이고, 직원도 대부분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직원들은 계약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금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아직 존재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폐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그 역할과 기능도 다른 상설 국가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의 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과 그 역할을 원래의 법 취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Ⅲ. 정보프라이버시권에 관한 제 문제

1. 들어가는 말

정보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점들은 최근 우리 나라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CCTV, 이는 범죄예방이라는 목적하에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나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국민의 생체정

보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문제, 피의자의 인권은 생각지 않고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신상정보의 공개, 주민등록번호 유출, 통합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SNS와 신상털기, 빅데이터 문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2. CCTV와 개인정보보호

범죄예방, 교통단속, 재난관리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CCTV¹²⁾’를 포함한 각종 영상정보처리기기등이 광범위하게 설치, 운영 중이다. 이러한 ‘CCTV’는 기술한 바와 같이 방법용, 교통정보수집용 등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현재 2012년 국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CCTV’는 429만여 대로 그 중 전국 택시에 10만대 설치되어 있다¹³⁾.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목적을 1)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교통단속 및 교통정보수집·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또,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중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지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현재 ‘CCTV’는 범죄예방 등과 같은 수사편의를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죄예방과 개인의 개인정보침해를 헌법 제37조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비례성, 최소 침해의 원칙 등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다음과 같은 ‘CCTV’의 문제점을 보면, 경찰이나 검찰이 방법용 CCTV는 강력범죄 예방 및 통제 기법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의 하나로 생각하고, 이에 대한 설치 확대

12)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이다(행정안전부,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 제2조 제6호).

13) 정부의 CCTV 종합 대책(2011.5)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15년까지 전국 230개 모든 지자체에 ‘CCTV 종합관제 센터’의 구축을 지원하여 방법용, 어린이보호용, 재난감시용 등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공용 CCTV 10만여대를 통합·연계하겠다는 계획 이다. 여기에다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군부대와 MOU를 체결하여 통합관제센터를 통해서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군사훈련 목적으로까지 공유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를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하는 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지금 설치되어 방범용 CCTV는 그 화질이 선명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고, 이에 대해서 범죄예방효과에 대해서 입증된 바도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CCTV'의 설치 확대에 대해서는 기술한 국민의 인권보호 내지 개인정보보호를 먼저 생각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지키면서 'CCTV'의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대기업이 'CCTV'를 설치하여 근로자들을 감시하고, 백화점들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우, 목욕탕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등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기술한 바와 같이 헌법상 제37조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초상권의 보호와 'CCTV'로 설치와 상관관계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CCTV'가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나 이는 한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보호는 망각한 생각이라 생각한다¹⁴⁾. 한 견해에 의하면 안전행정부는 이제라도 인권단체, 개인정보전문가, 인권위원회, 보호위원회, 관련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협의체를 구성하여 문제점을 검토·협의하는 등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¹⁵⁾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부가적으로 현재 거대 조직으로 되어 있는 안전행정부가 주축이 되기 보다는 개인정보위원회¹⁶⁾가 주도가 되어 이러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3. 지문·DNA 등 생체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문제

지문, 얼굴, 홍채, 성문, DNA 등과 같은 생체정보는 개인에 고유한 정보이고 수정·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식별성이 매우 높다. 본인 식별성이 높은 만큼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도 높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살인·방화·성폭행·강도·마약·상습폭력·조직 폭력 등 11개 유형의 범죄⁴⁶⁾를 저지른 가해자들의 디엔에이(DNA) 정보를

14) 인권위 보고서에서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운영 목적을 보다 구체화하고, 정보의 공유를 최소화하고, 이에 대한 운영결과를 주민에게 공개 하는 등을 통하여 'CCTV'의 설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되고, 또한 그 수단의 적합성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15) 정보인권보고서, 전계서, 34면 참조.

16) 아니면 차선책으로 인권위원회가 담당하는 것도 좋은 안이라 생각한다.

경찰 방화·실화, 살인, 약취·유인, 강간·추행, 절도·강도, 상습폭력, 조직폭력, 상습 강·절도, 성폭력, 마약,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 균형법상 상관살인 등이다. 검찰이 수집해 수사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단 1회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디엔에이 정보수집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들 법률은 DNA정보의 이용과 활용에 치우쳐 있어 DNA시료의 채취·취급 방법, DNA정보의 보호·보관 방법, DNA 시료 및 정보의 폐기 방법·절차 등에 대해서 충분한 규정과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서도 유전자정보의 수집·이용시 별도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 이외에 암호화 의무 등 아무런 추가적인 보호조치가 없다. DNA 시료 및 정보가 제3자의 손에 들어가거나 해킹·도난을 당할 우려가 없지 않은 현실이다¹⁷⁾. 이러한 국내 법령에 비추어 미국의 의료정보보호법에 의거하게 되면 미국의 경우, 본의의 동의가 없으면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취급하거나 사용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사용에 있어서도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미국의 경우, DNA 시료 및 정보에 대하여 의학적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도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기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DNA 시료 및 정보에 대하여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DB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헌법 제37조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성범죄자,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전력자의 신상공개 및 이웃주민(지역사회)에 대한 고지를 주요 내용¹⁸⁾으로 하는 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알선 등의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해당 범죄자의 신상정보(성명·연령·생년월일·직업·주소)와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2002년 7월 19일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헌법상 보장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과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의심이 있어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2003년 6월 26일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비록 헌법재

17) 인권위보고서, 전개서, 34-35면 참조.

18) 미국 메간법(Megan's Law 1994) 등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도 제정되었다.

판소가 위헌결정의 정족수에 미달하여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다수의견은 위헌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¹⁹⁾.

국가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범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상당 부분 침해하고 있는 것 같다. 성범죄자도 기본권의 주체이고 이러한 기본권 주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데, 그 목적이 정당하고 비례형량하면 공익이 우선일 수는 있으나, 그 수단은 수사과정에서 성범죄자의 기본권을 함부로 다룰 수 있고, 또한 피해도 최소한 침해해야 하나 그러하지 않은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또한 이러한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게 되면 그 가족이나 친인척이 갖는 고통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헌법 제37조의 과잉금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언론에서 보도하는 경우 그 보도가 가족이나 친인척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도록 하고, 성범죄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국가는 그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5. 통합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법무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Korea Integrated Criminal System) 구축 사업이 2009년 8월 완료됨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등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들이 각종 형사사법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수신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로써 모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들은 조서, 영장, 공소장, 판결문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한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안에는 경찰의 각종 조사 및 수사기록, 검찰의 기소·불기소 내용, 법원의 판결문 내용, 교정기관의 형집행기록 등 모든 형사사법관련 정보가 전자화되어 기록·저장된다. 당초 법무부는 하나의 형사사법통합정보망을 구축해 경찰·검찰·법무부·법원 등이 수집·처리하는 모든 형사사법 정보를 하나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사업’을 추진 하였다. 그러나 형사사법통합망 구축 사업은 처음부터 빅브라더의 출현과 정보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인권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

19) 인권위보고서, 전계서, 36면 참조.

쳐야 했고, 사업 막판에는 검찰과 법무부의 정보 독점 강화, 사법권 독립침해 등을 우려하는 경찰과 법원의 반대로 시스템 '통합'에서 시스템 '연계'로 후퇴하였다²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경찰의 범죄정보 관리시스템인 심스(CIMS, 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를 포함해서 검찰·법무부·법원 등이 각기 구축·운영 중인 정보망을 하나로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저장되는 정보의 종류, 범위, 보존기간 등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았고, 저장된 정보에 대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열람 권한 및 범위에 관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법무부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근거 마련을 위해 뒤늦게 2009년 5월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법안」과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두 개의 법안은 2009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국민의 기본권 중 정보프라이버시권을 제한하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가에 의한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

이러한 시스템과 유사한 법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형실효법)인데 현재는 범죄경력자료 삭제 규정을 두지 않은 형실효법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김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즉, 형선고가 실효되면 범죄경력 자료를 삭제하도록 법이 따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은 재판과정에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중 정보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여지가 크고, 재판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으로 국가의 모든 기관을 감시할 여지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빠른 시일 내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국민의 정보프라이버시권을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화 내지 법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 해킹사고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유출

최근 1회 1천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매년 거의 빠지지 않고 발생 하고 있다. 2008년 정유회사인 GS칼텍스의 1,100만명 고객정보 유출사건, 같은 해 우리나라 대표적인 인터넷 오픈마

20) 정보인권보고서, 전계서 38면-39면 참조.

켓인 옥션의 1,800만명 고객정보 유출사건, 2010년 신세계백화점 등 소매유통회사들의 2,000만명 고객정보 유출사건 그리고 2011년에는 3,500만명에 이르는 SK닷컴의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관리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이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극히 제한적으로 이탈주민들, 성전환자들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다²¹⁾. 안전행정부는 인터넷 포털이나 온라인 장터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침해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원은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법령의 미비로 주민등록번호변경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²²⁾.

이러한 사실과 법원의 판단은 주민등록법이 미비하고, 필요한 법률적 규율 사항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되며, 헌법 제37조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갖추고 있지 못함으로써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 사료된다. 또한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별로 강제로 부여하고, 그 이용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강제되며, 사인 간에 주민등록번호의 불법적 이용이 일어나는 것은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2012년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제·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민등록번호제의 문제점은 남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민등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이핀(I-PIN,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을 도입하여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의 유출과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하였으나, 이 또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그 이유는 아이핀 발급업체인 본인확인기관이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기술한 주민등록의 폐해를 일소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서는 전자주민증을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이 또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에 폐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주민등록에 대한 사용을 삭제 또는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주민등록번호제의 도입 목적에 맞게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민등록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주체인 국민이 좀더 강화된 동의권 내지 거절권을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1) 상계서, 41-42면 참조.

22) 서울행정법원 2012. 5. 4. 선고 2011구합37633

7. SNS와 신상털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란 사교적인 연결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싸이월드 미니홈피나 네이버 블로그, 카페도 큰 범주에서 본다면 SNS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SNS란 웹상에서 선후배 동료 등 지인과의 인맥 관계를 강화시키고 새로운 인맥을 쌓으며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SNS가 인맥관리, 친목도모라는 순수한 목적을 벗어나, 광고, 마케팅에 상업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타인의 신상털기, 성희롱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에 친구 맺기를 원하면, 성, 이름, 비밀번호, 성별,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고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SNS의 일반 인터넷 이용자나 휴대폰 이용자에게 검색 엔진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이러한 검색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동의를 받는 방법을 제22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개인정보 공개·공유의 원칙을 명확히 하여 헌법 제37조의 취지에 맞게 신설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8. 인터넷 패킷감청(DPI) 등 통신감청의 급증

방송통신위원회의 감청협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현황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수사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의 감청 및 통신자료 제공현황(통신사실확인자료 포함)은 83만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감청 1,081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238,869건, 통신자료 제공 591,049건 등이다. 여기서 국가정보원의 감청이 5009건으로 가장 많으며, 2009년 9월 언론을 통해 공개된 국정원의 인터넷 패킷감청(Deep Packet Inspection)은 인터넷회선을 오가는 패킷을 필터링해 패킷 내용을 감청하는 방법으로 인터넷회선 장비에 감청설비를 연결해 감청 대상자의 인터넷 사용 내역과 내용을 복원하는 것이다. 2008년 이후 2011년 8월까지 판매 인가된 감청 장비는 57대로, 그 중 46대가 패킷 감청 장비였으며, 2009년 현재 국정원은 31대의 패킷 감청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킷감청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자 우편, 인터넷서핑, 전자상거래, P2P 등 개인의 인터넷

활동 모두가 감청의 대상 이 될 수 있고, 수사 대상 범죄와 관련이 없는 일상적인 통신까지 모두 감청의 대상이 되어 개인의 사생활을 유추하고 제멋대로 구성할 수 있는 등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²³⁾.

이러한 감청은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정원은 국가안전 보장이라는 이유로 감청을 하고, 최근에는 긴급감청제도를 도입해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 없이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국가의 감청은 국민의 정보프라이버시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며, 긴급감청제도는 위헌의 가능성이 보이며, 감청을 하는 경우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지키며,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에 인터넷을 통한 감청의 경우, 그 감청의 범위, 수단,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9. 디지털 증거수집을 위한 포괄적 압수·수색

형사소송법상 범죄와 관련된 정보만을 압수수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일을 열기 전까지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알 수 없는 디지털 증거의 불가시성과 불가독성의 특성을 악용하여 수사 편의상 저장매체가 통째로 압수되는 사례가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2009년 4월 검찰이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 하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간부 등 100여명의 전자우편을 일부 7년 치까지 확보해 조사하기도 하였으며, 2009년 6월에는 수사기관이 PD 수첩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작에 참여한 작가가 사적으로 주고받은 전자우편의 내용까지 공개하여 전자적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범위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합법 적이고 정당한 법 집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⁴⁾.

201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청구할 때는 기존의 필요한 때에 더해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압수·수색의 대상이 전기통신인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청구서에 그 작성 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하드디스크 등 정보저장 매체인 경우에는 정보

23) 정보인권보고서, 전게서, 45-47면 참조.

24) 정보인권보고서, 전게서, 48-49면 참조.

의 범위를 정해 현장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해서 제출하도록 하여 정보인권 침해문제를 상당부분 개선하였다. 또 통지의무를 명시해 전자정보를 압수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했으며, 전기통신을 압수했을 때에도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분에 대한 정보추출이 불가능하거나 압수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보저장 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²⁵⁾. 또한 대법원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위 영장 집행이 적법성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²⁶⁾.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위 방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 대상 역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상 당연하다. 그러므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 혐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출력 혹은 파일복사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주의 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다. 한편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자물쇠를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그와 아울러 압수물의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31조 등),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는 물론 그와 무관한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의 사생활 정보가 들어 있는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위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열람 혹

25) 상계서, 50-51면 참조.

26) 대법원 2011.05.26. 자 2009모1190 결정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은 복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 보장,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의 저장매체에 대한 열람·복사 금지, 복사대상 전자정보 목록의 작성·교부 등 압수·수색 대상인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집행절차가 적법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형사소송법의 입법이 필요한데, 그 내용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종합해 보게 되면, 서버에 저장된 전자우편의 압수·수색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범죄혐의와 관련된 작성기간 등의 범위를 특정하도록 하며, 전자우편 가입자와 수사대상자의 변호인에게 수사처분 사실의 사전 통지, 집행절차 참여, 불필요한 정보의 삭제요구, 환부권 등을 규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 빅데이터의 활용과 잊혀질 권리

빅데이터란 기존의 분석도구 및 관리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말한다. 현재 시대는 가상과 현실, 현실과 가상이 공존하는 시대이다. 내가 현실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라가고 사람들은 그러한 정보들을 어디서든지 볼 수 있다. 이처럼 모바일에서 생산하는 실시간 정보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정보의 양도 엄청나게 많다. 월마트의 경우 시간당 100만 건 이상의 거래 기록이 저장되며, 트위터의 경우 2011년 매일 약 1억 1,000만 개의 트윗이 발생되고 있다고 한다.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인해서 정보의 생성뿐만 아니라 확산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다. 결국, 이처럼 엄청나게 생성되는 데이터를 기업이나 정부는 기존의 체계 및 관리 방법으로 관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빅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다룰 수 있을지 현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에서 정부, 대기업과 대형 포털사이트는 국민의 정보프라이버시권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특히 EU법상 잊혀질 권리가 문제인데, 이는 개인정보 삭제·처리정지 요청권, 개인정보 삭제·처리정지요청 통지의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삭제·처리정지 요청권은 도입되어 있으나 개인정보 삭제·처리정지요청 통지의무 등은 도입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한 입법의 미비를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해야 하며, 또한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 사이 통합과 연동의 요건·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도 입법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IV. 결어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으로 말미암아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에 없어졌다고 생각하였으나, 아직도 법령 체계상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는 기술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개별법이 폐지되지 않아 통합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이 되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중에 중요한 업무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심의·의결권만 갖고 있어 권한이 없는 그런 허울만 좋은 장관급 위원회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원래의 취지에 맞는 그런 국민이 개인정보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를 폐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그 위상과 법적 지위가 다른 상설 국가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또한 기술한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못할 경우에는 인권위원회가 국민의 기본권보호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정보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내용 중에 가장 많은 침해사례는 CCTV에 관한 것인데, 'CCTV'의 설치 확대에 대해서는 기술한 국민의 인권보호 내지 개인정보보호를 먼저 생각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지키면서 'CCTV'의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직도 'CCTV'의 설치를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 견해도 있는데, 이는 국민의 초상권과 정보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망각한 견해라고 생각하고, 'CCTV'의 설치도 최소한 필요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지키면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국내공항 전신검색장비 설치와 관련하여 전신검색장비의 설치가 문제되는바,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침해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²⁷⁾. 이 이외에 인권위에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에 대하여 인권침해 권고를 하였고²⁸⁾, 국립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열람실 좌석 이용시 지문인식시스템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²⁹⁾.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현재 개인정보보호는 아이러니하게도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보다는 인권위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한다.

또한 강력범죄 피의자의 가족, 친지 등에 대한 프라이버시권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사이버수

27) 인권위는 2010.6.10.자도 이에 대하여 법률근거도 명백하지 않고, 과잉금지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많으므로 설치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28) 인권위 2006.2.27자 05진인1055.

29) 인권위 2005.7.25. 04진인3372.

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의 개선이 필요하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보장 자치가 필요하며, 기술한 바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재정비, 생체정보의 수집과 처리원칙의 마련과 이에 대한 오남용 방지장치, 인터넷 패킷감청의 제한 기준 및 절차 등 마련,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원칙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정보의 문제는 계속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갈수록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가 단순히 제도적 강화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개인정보유출의 사전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들은 항상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수집 및 이용 목적 등 제반 고지사항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제공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제공되고 이용되는지 스스로 감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들도 항상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확성 및 안전성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주체가 언제나 접근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만 국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제뿐만 아니라 정보 그 자체에 대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사이에서 조화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보프라이버시권의 이슈와 과제 토론



이광진 (서울디지털대 교수)



정보인권 보고서 발간 기념 공동학술대회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보장을 위한 방향 설계

발표: 장용근 (홍익대 교수)

토론: 문재태 (동국대 박사)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사상의 자유시장과 한계



장용근 (홍익대 교수)

I. 문제의 소재

우리나라에서는 1년 전 세계경제의 위기와 촛불집회 등을 경험하면서 미네르바사건과 촛불 집회에서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건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법 47조 1항의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에 의해 기소되었다.

Herring은 인터넷 중심의 CMC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고(접근성), 이용자들의 개방적 성격, 열린 특성의 이용행태, 명시적 검열 장치의 부재, 사회적 탈맥락성(social decontextualization)등의 이유로 전자민주주의의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¹⁾. 사이버공간은 지금까지의 인간간의 교류방식과는 달리, 탈공간성과 탈시간성에 더하여 탈인격성과 탈형식성의 속성을 겸비함으로써 기존의 사회구조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회적 행위양상들을 창출해 내는 현실세계의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을 구가하는 공간이기도 하다²⁾.

이러한 공간의 특성으로 기존의 권위적인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보다 더 권위적인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어쩌면 정당한 의견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또한 억압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기에 다른 나라보다 더 가상의 공간이 발달할 수 밖에 없는 우리 국민들이 전자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외에 무책임성과 전파의 과급효과가 기존의 표현보다는 너무나 크다는 측면과 전파의 과급효과가 기존의 표현보다는 너무나 크기에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해의 사후구제만으로는 공익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기에 기존의 표현의 자유의 이론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기도 하다.

1) Susan Herring, Gender and Democracy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Electronic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3, 1993.

2) 한상희, “사이버민주주의-그 의미와 헌법적 전망”, 誠信法學 창간호 1998, 18면.

II.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1. 의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국민전체적 관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불특정다수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이러한 주목적에 부수하여 인터넷상의 자신의 의견이나 글을 올리는 자에 대하여 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음으로서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려는 자는 자신의 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진실여부를 검토하고 자신의 양심과 사상에 기초하여 공익에 도움이 되는 글을 올리게 함으로서 민주시민의 책임성을 부과하려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상의 자유시장이론과 국가개입의 정당성

① 의의

단순한 기존의 표현의 자유가 아닌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의 문제이기에 기존의 표현의 자유의 이론의 보호이외에 쌍방향성과 전파가능성이 훨씬 용이하고 거대해진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라고 하여도 오프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것은 국내외의 검증된 사실에 기초한다는 점을 밝혀 둔다. 다만 실제로 중국에서는 시민들의 인터넷상에서의 정치적 토론을 제한하고 있으며, 국내 인터넷 이외에 해외인터넷에 접속하는 것 자체도 강력하게 막고 있다³⁾. 이러하듯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는 한 나라의 정권의 존립자체를 흔들 수 있는 정도의 파괴력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표현의 자유와는 다른 것을 인정하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보인다.

단순한 미국의 이론의 적용보다는 우리의 현실에 기초하여 세계에서 가장 전자민주주의가 활발한 우리나라가 그 모본을 보여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의 규제인 처벌은 국민들의 자율적인 통제와 시민의식이 성숙되는 경우에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이고 다만 단기적으로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⁴⁾를 진정으로 성숙된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3) 정영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규제”, 『세계헌법연구』 6호, 452면.

4) 한상희, “전자민주주의의 헌법적 수용과 과제-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헌법 50년의 평가와 정보화시대

전제로서 현재의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토론을 전제로 한 다수결을 통해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기본권으로는 의견과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⁵⁾. 이는 다양성을 전제로 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보인다.

여기서 사상의 자유시장이론⁶⁾은 선형적인 판단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과 검증이라는 단계를 거쳐 진리를 추구한다는 전제하에서 주장된다. 여러 주체가 서로 경쟁하며 수준 높은 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장의 경쟁성을 통해 사상의 자유시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대안이 되리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사상의 자유시장은 국가의 자유방임을 의미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유에는 이에 걸맞는 책임이 따라야만 진정한 의미의 자유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국가가 도래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② 정보격차의 해소의 문제

i) 의의

과거 미네르바사건 등이 발생한 데는 중요한 정보가 정부가 독점되어 있고 그에 대한 접근은 소수에게만 있다는 정보격차의 문제가 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러한 정보격차로 인해서 실제로 인터넷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민권을 박탈하게 하며 경제적 원인으로 인해 사회적 계층을 형성시켜 이러한 차이로 인해 정치적 차별까지 확대하게 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검토도 어느 정도 정보화가 진행된 서구와 아시아의 선진국들의 문제이지 전세계적으로 본다면 인구의 70%가 컴퓨터사용은 별개로 하더라도 문맹이고, 심지어 상당수의 사람들은 전혀 전화를 걸러 본 적도 없다고 한다⁷⁾.

정보 격차에 대한 연구는 과거에도 신문이나 인쇄 매체가 지식의 전달 수단인 시대에서도 존재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심각히 검토하지 않은 채, 간과되었는데 그 이유는 인쇄 매체에 대한

의 헌법적 과제”, 「민주헌정과 국가정보화-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의 실천을 위한 공법적 과제」, 한국 공법학회, 1998.6 60면.

5) NORBERTO BOBBIO, NORBERTO BOBBIO, The Future of Democracy -A Defence of the rules of the Game, 1987, p.25.

6) 이는 미국의 홈즈대법관에 의하여 주장된 것으로서 존슈어트 밀의 사상이 그 기반이 된 이론이다.

7) Barry N. Hague and Brian D Loader (eds), Digital Democracy :Discourse and Decision Making in the Information Age, Routledge,1999, p.140.

대안 미디어로서의 라디오와 TV가 급속도로 확산됨으로써 그 대 중적 설득력이 획득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⁸⁾.

그런데 정보 격차라는 연구가 활성화 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컴퓨터와 네트워크 기술이 결합된 인터넷이 확산되면서부터였다. 이는 기존의 라디오와 TV가 가지는 오락성 성격 이외에 학습적 성격을 지니게 됨으로써 성별, 계층 지역적 격차를 크게 하였기 때문이다⁹⁾.

ii) 사상의 자유시장(민간의 역할)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사상의 자유시장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데에는 정보격차의 해소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즉 표현의 자유의 신장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더 풍부하고 우수한 정보를 국가이외에도 민간에서 자유롭게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사상의 자유시장이론은 오늘날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미네르바사건 등이 발생한 데는 중요한 정보가 정부가 독점되어 있고 그에 대한 접근은 소수에게만 있다는 정보격차의 문제를 민간인이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하였다는 점을 보면 앞으로도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시장은 더 확대되고 공익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iii) 국가의 역할(국가개입의 정당성)

헌법적 측면에서는 알권리 차원의 문제이자 정보복지권¹⁰⁾에서의 문제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정보의 차이는 단지 직업이나 재산이나 기회의 차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주권의 실질화에 역행한다고 할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보 격차의 해소는 국민주권의 실질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된다. 오늘날 국민들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 복지 국가가 도래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에 있어서도 통제가 아닌 정보의 복지국가적 관점에서의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기반시설의 마련이라는 의미에서의 정보국가는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여기서 이런 미네르바 사건이 벌어진데는 국가의 정보제공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국가에서 정확한 정보와 그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은 점과 과거 IMF사태에서 배운 국민들의 경험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는 당해 규정이 아닌 국

8) 전석호, 정보사회론: 커뮤니케이션 혁명과 뉴미디어, 나남, 1993, 32면.

9) 김문조·김종길, “정보 격차의 이론적·정책적 제고”, 한국사회학 제 36집 4호, 2002년, 127면.

10) 김문조·김종길, 전개논문, 148면.

가의 신뢰의 문제인 점은 인정하기에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정확한 정보제공 즉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 본 규정의 제한적인 관점에서의 존치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국가는 자유시장의 실패의 중요한 원인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허위정보에 기초한 국민들의 판단의 오류와 그에 기초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에서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적인 개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정보제공의 역할을 하는 국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보이고 이러한 점에서 국가의 개입의 정당성의 원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국가의 개입의 정당성의 원리는 현행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정 여부 및 근거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더구나 정보국가원리가 다른 헌법상의 기본원리, 예를 들면 민주주의나 법치국가, 사회국가원리 등과 더불어 헌법상 기본원리로 인정되고 있다는 주장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우리 헌법상으로는 완전한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헌법의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127조 1항)는 조항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헌법 제10조와 함께 상승적으로 작용하여 특히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국가의 정보화기술개발을 통한 경제발전과 아울러 정보불평등 문제의 해결과 같은 기본권적 자유의 보장에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 지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국가원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수단으로서의 국가목표규정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헌법 37조 2항은 기본권의 제한의 근거로서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기에 표현의 자유의 제한의 근거규정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하지만 후자보다는 전자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정보국가의 원칙적인 모습이다.

이로서 국가에게 국민의 정보와 관련된 생활의 보호와 육성에 관한 과제 또는 책임이 부여된다. 정보국가원리는 국가의 정보과제 또는 책임을 통하여 실현된다. 다시 말하면 정보국가원리는 국가의 정보정책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¹¹⁾.

구체적으로 선거에서의 공정성,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부당광고나 기타 규제 등 모두 표현의 자유의 목적인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국가의개입이 허용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정보국가원

11) Steiner은 문화에 관련된 국가의 책임에 있어서도 위임을 자각하는 권한은 그 위 임과 관련된 것의 정책적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Steiner, *K ulturauftrag im staatlichen Gemeinwesen*, in: VVDStRL 42 1984.) 이러한 관점 에서 볼 때 정보국가원리와 국가의 정보정책의 관계를 추론할수 있다.

리의 개입수단에 대하여 검토의 필요성이 있는데 정보국가원리에는 차별위주보다는 주로 정보 제공과 정보기반시설의 정비 등에 주안점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차별이 가능한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자제되는 것이 민주주의발전 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인다.

3.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① 보호영역의 의의

다음으로 보호영역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확립된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아동외설은 확립되게 배제)에 해당시에는 당해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기에 처벌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물론 경계선상에 있는 표현의 자유의 경우(상대적 보호영역-성인음란물)에는 헌법 37조 2항상 차별의 대상이 될 여지도 있다. 하지만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연히 처벌대상 인 것은 아니다. 이는 무시내지는 관용, 민사상손해배상, 행정적 제재 등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 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보호영역은 정신적, 이성적 방법에 의한 언어나 행동의 표출을 의미하 기에 이성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는 표현은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다. 또한 여기서의 표현의 자 유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전달적인 목적으로 행해져야 한다¹²⁾. 표현행위는 사실주장과 의견표현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 의견표현은 그것이 공적인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추정을 받지만 사실주장은 허위의 경우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진실한 사실일지라도 그것이 명예훼손적 발언인 경우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면책이 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의 천국인 미국에서도 화자가 조기폭력단체에 린치를 가하도록 선동하는 표현, 폭력적 반응을 유발시키는 이른바 투쟁적 언어나 진정한 협박, 아동외설, 명예훼손, 서비스나 상품과 관련된 허위의 표현, 성차별을 조장하는 불법적 표현 등은 금지되고 처벌되는 것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미국의 수정헌법 제 1조는 결코 규제되지 아니하는 수다(talkatives)를 보호하 려는 것은 아니다¹³⁾. 하지만 미국의 수정헌법 제 1조는 정부에 대한 반대여견의 억압이나 대중

12) Rodney A. Smolla, Smolla and Nimmer, On Freedom of speech ; A Treatise on The Amendment, Student Edition, Matthew Bender, 1994, p.5.

13) Ronald D. Rotunda, The Warren Court and Freedom of the Press, in the Warren Court (Bernard

적이지 아니한 견해 표명의 억제에 대해서는 금지하면서 오히려 이러한 견해들은 보호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사회의 장점인 다양성을 보호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근거하고 있다.

② 보호영역의 비교법적 검토

과거 영국에서는 국가나 공무원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이 문서선동죄로 간주되어서 처벌된 경우가 있었으나 후에 관행적으로 그리고 입법에 의하여 제한이 가해지게 되었다¹⁴⁾. 하지만 오늘날 이에 대한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허용되어서 공익에 도움이 되고 진실한 사실이라면 허용되기에 해결되게 되었다. 사실적 주장의 경우에는 진실하고 공익에 적어도 해가 되지 아니할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처벌까지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음란한 표현 등은 공익에 해하는 표현의 구체적 예시이자 표현의 자유의 한계이자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물론 공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표현하는 경우는 현행형법 310조상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당연한 규정이다. 음란한 표현도 국가에 따라서는 표현의 범위에 속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익을 해하는 허위의 사실은 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금지되어야 하는 표현을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규정이라고 보여진다¹⁵⁾. 당연한 규정이자 일반적 규정으로서 공익을 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진실한 사실로서 국민의 정당한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범위내에서만 인정가능하다는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규정한다고 보인다. 다만 처벌의 과잉금지의 문제는 별개라고 보인다.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에 기초한 폭력적 선동은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히 미발표 내지는 미확정의 사실의 경우 어느 정도의 추측성이나 예측성표현은 공익을 위하여 표출하는 경우, 후에 이것이 허위라고 증명되더라도 이는 표현행위 당시에 미리 대비함으로써 공익에 해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되기에 본조의 적용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인다¹⁶⁾. 허위사실에 기초한 폭력적 선동의 경우도 무조건 처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schwartz, e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이부하, 표현의 자유와 미국헌법, 한국학술진흥정보,2007, 12-13면에서 재인용 참조.

14) 이부하, 표현의 자유와 미국헌법, 한국학술진흥정보,2007, 36-37면 참조.

15) 국제인권규약19조는 1,2호에서는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3호에서는 이러한 자유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면서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보호(사익보호)나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공익상 요청)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표현의 자유로 우리 헌법 37조상의 취지와도 동일한 규정이라고 보이고 동조의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유포시에는 표현의 자유영역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시내지는 관용으로 해결할 것도 존재한다¹⁷⁾. 이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37조 2항의 대상이 되어서 당연히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공익에 해가 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가되지 아니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알 권리를 전제로 하는 표현의 자유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보호의 정도도 다르다고 할 것이다. 즉 당해 조항의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사실을 전기통신망을 통해서 유포하는 행위는 표현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는 아니하나 이를 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인지 여부는 신체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영역에 해당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다.

③ 표현의 보호영역과 당사자적격의 완화의 구분의 필요성

또한 보호영역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당사자적격의 완화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보호영역은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기본권의 개념적 내재적 한계인 타인의 권리, 도덕률, 헌법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가능한 것이기에 명백한 허위나 폭력적 행동을 조장하는 표현 등은 보호영역안에 들어가는 아니된다. 보호영역은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기본권의 개념적 내재적 한계인 타인의 권리, 도덕률, 헌법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가능한 것이기에 명백한 허위나 폭력적 행동을 조장하는 표현 등은 보호영역안에 들어가는 아니된다. 이러한 보호영역은 진지한 고려와 성찰 후에 합헌이라는 결론에 포함된 영역을 보호영역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사후적 개념이다. 하지만 설사 현행법상 불법적인 표현이기에 제한을 받는 것이 위헌인지를 다투기 위해서 헌법재판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이는 당사자적격의 완화의 문제이고 이는 헌법재판의 활성화와 표현의 자유의 신장을 위해서 넓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보호영역은 진지한 고려 후에 결론적으로 헌법37조 2항에 비추어 문제가 되지

16) 이러한 점에서 포털사이트인 다음아고라에서 외환거래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미네르바사건은 본 경우에 해당하여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공익을 해할 목적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결정은 타당하였다고 보인다.

17) 미국산소고기촉불집회에서 시위여성이 강간당하고 시위대에게 무차별폭행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를 형사처벌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서 관용의 정신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또한 만우절에 있어서 거짓말이나 친구사이의 거짓말이 중대한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단지 웃음이나 거질말쟁이로 사회적 평가로 끝낼 사항도 존재한다. 하지만 사회적 해악이 크다면 단지 관용으로 끝낼 일은 아니다.

아니하는 보호가치 있는 영역을 의미하고 당사자적격의 완회는 헌법재판의 시작단계에서 일단 헌법재판에 들어가기 위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명백히 헌법재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일단 헌법재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하는 개념이다.

4. 표현의 자유의 한계

①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인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보장을 위한 법리중 ‘사전억제금지의 이론’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사후적으로는 헌법 37조 2항에 기준에 비추어 제한될 수 있고 미국의 대부분의 판례들도 제한가능성은 인정하고 있다. 결코 절대적이지 않은 상대적으로 공익적 요청이 있다면 제한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의 천국인 미국에서도 이익형량원칙에 의해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이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건에서 일부 소수의견이 절대성을 주장하나 표현의 자유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있다¹⁸⁾. 이는 내심적 권리가 아닌 외부적으로 표출된 권리들은 당연히 상대적 권리라는 점에서 당연히 공익적 요청이 있다면 사후적 제한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내심의 자유가 아닌 외부로 표출된 권리의 경우에는 자유못지 않게 그에 상응한 책임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당연한 불문물적 관점에서도 당연한 결론이다. 다만 이와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이론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알권리에 증진하여 공익에 기여하기에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과 공익이나 사익에 해가 되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고 양 측면은 결코 모순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② 정치적 표현과 경제적 표현의 보호정도의 동일성 여부

미국에서는 상업적 언론에 대해서 비상업적 언론과 동일하게 다루다가 1930년대의 경제공황을 계기로 경제적 활동으로 보아 강한 규제대상으로 되기도 하였다¹⁹⁾. 따라서 정부비판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경제관련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동등한 보호를 받

18) *Konigsberg v. STATE Bar of California* 366 u.s. 36, 56, 81 S.Ct. 997, 1010, 6 L.ED.2d 106, 1961참조.

19) Daniel E. Troy, *Advertising: Not Low Value Speech*, 16 *Yale J.on Reg.*, 85, 1999.

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우리 경제가 국가신인도의 실추와 그로 인한 국민들의 삶의 커다란 충격을 경험하였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표현을 정치적 표현과 동일선상에서 검토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경제적 표현도 원칙적으로 정치적 표현 못지않게 보호되어야 하나 불특정다수인의 매우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익에 미치는 해악이 클 수 있기에 제한의 정도가 더 클 수 있을 것이다.

Ⅲ. 불명확하기에 무효의 원칙과 법률의 일반성과 추상성의 원칙과의 차이-미네르바사건을 중심으로

1. 의의

법률자체의 위헌성과 법의 적용의 남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전자의 문제는 규범통제의 문제로서 헌법재판소의 권한 내의 문제이고 법의 적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구체적 타당성에 기초하여 법원의 통제하에 놓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다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법원의 재판도 헌법적 쟁점적 문제를 잘못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시에는 중국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통제하에 들어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하지만 법의 집행의 자의성이 법률자체에서 근본적으로 기인하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통제범위내라는 점을 기초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불명확하기에 무효라는 법률해석 및 제정의 원리와 입법기술상의 특성으로 인한 어느 정도의 일반성과 추상성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후자의 경우 법률해석으로 어느 정도 명확한 적용범위가 도출될 수 있으나 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법률의 명확성원칙의 의의는 미국의 경우 언론·출판을 제한하는 법률은 그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위헌이고 무효라는 것이 확립된 원칙인데, 그 근거는 ①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법률로서 애매한 내용을 가진 법률은 기본권에 위협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기본권의 행사를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②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선택적으로 법을 집행할 재량을 가지지 못하도록 법률에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해야 기본권에 관한 법집행을 통제할 수 있고, ③기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 인용되어야 하는 정부의 규제는 좁고 명확하게 한계지워져야 하

며, 이런 법률만이 어떤 언론이 규제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국회의 판단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다²⁰⁾.

명확성의 원칙은, 입법자의 입법의도가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며, 법률규정의 구성요건적 내용에 따라 국민이 자신의 행위를 결정지을 수 있도록 명확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우리 헌법상에도 원칙적으로 타당하며, 헌법재판소도 “법치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입법자의 입법의도가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며, 이로써 법률규정의 구성요건적 내용에 따라 국민이 자신의 행위를 결정지을 수 있도록 명확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시(憲裁決 1992. 1. 28, 89헌가8) 해서 인정하고 있다.

나가서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에 대한 위헌심판사건(憲裁決 1992. 2. 25, 89헌가104)에서 헌법재판소는 “①법규의 내용이 애매하거나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하면, 어떠한 경우에 법을 적용하여야 합헌적인 것이 될 수 있는지 법집행자에게도 불확실하고 애매하게 되어 어떠한 것이 범죄인가를 법제정기관인 입법자가 법률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법운영당국이 재량으로 정하는 결과가 되어 법치주의에 위배된다. ②이러한 명확성의 원칙은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일반론으로는 어떠한 규정이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의 원칙이 더운 엄격하게 요구된다(이러한 의미에서 선명한 풍속 사회질서에 반하는 통신-위헌)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사법이나 국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률에 있어서는 불명확한 내용의 법률용어가 허용될 수 없으며, 만일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용어의 개념정의·한정적 수식어의 사용·적용한계조항의 설정 등 제반방법을 강구하여 동 법규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봉쇄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법치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입법자의 입법의도가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며,

20) 金文顯, “비디오물의 事前審議의 違憲性 與否”, 考試研究, 1994년 7월, 62-63면 참조.

이로써 법률규정의 구성요건적 내용에 따라 국민이 자신의 행위를 결정지을 수 있도록 명확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어느 정도 명확하게 법해석이 가능하다면 불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인다. 물론 처벌규정이나 표현의 자유의 경우 형벌이자 표현의 자유의 제한규정이기에 더욱 명확할 것이 요구되는 것은 기존 헌법재판소의 입장으로 보아 명백하다.

2. 공익의 불명확성여부

(1) 공익의 의미

‘공익’의 의미는 “사회 공동의 이익”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은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다. 전기통신에 관한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기본법의 기본 목적이나 「사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통신」을 벌하는 같은 조 제2항과 대비되는 규정형식 등을 종합할 때, 동법에서 ‘공익’은 개개인 또는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에 상위하는 ‘사회공동의 이익 즉 불특정다수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구체적 입법의 검토

처벌이 아닌 불이익규정으로는 “민법 제38조(법인설립허가의 취소)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변호사법 제102조(업무정지명령)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 “국적법 제9조(국적회복 불허요건)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벌규정으로는 형법에서의 165조의 방화죄와 178조의 일수죄,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인 310조의 공익이 들어가 있다. 다만 전 2자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상태이고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인 310조의 공익은 본 규정과 같은 주관적 목적 요건이나 위법성조각사유이기에 수익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나 공익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처벌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처벌요건적 기능을 하기에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은 공통적이기에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형법 310조의 반대해석을 해보면 “공익에 반하거나 허위사실에 어느 하나에 해당시에도 처벌한다”는 의미가 도출되는데 본조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그리고 허위

통신을 한 경우로 오히려 적용범위가 축소된다”는 점을 비교한다면 더 처벌의 범위도 축소되고 상대적으로 명확성도 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당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정치, 경제, 문화 부분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허위사실이 존재하는데 이를 다 포괄하면서 국민들에게 간결하게 표현할 만한 표현이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이를 대체할 더 명확한 규정은 있다면 개정하는 것도 타당하다.

만약 본조가 “공익에 해가되는 행위를 처벌”한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만 위의 형법규정처럼 “공익이라는 단어가 다른 당해 규정의 본질적인 언어와 결합하여 제한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에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조는 개인의 명예훼손을 넘어서는 공적인 관심사에 한정하여 불특정다수에게 허위사실을 유포시에만 적용된다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기에 전체적으로 명확하다고 보인다.

표현의 자유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경우에만 제한이 가능하다는 이론은 헌법학계와 실무계에 확립된 이론이기에 공익을 해할 목적의 해석에서도 너무 추상적인 해석보다는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해석하는 한 합헌의 여지는 있다고 보인다. 특히 본 규정과 같은 위협범을 추상적 위협범의 형태까지 처벌한다고 보기보다는 구체적인 위협범에 한정하여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협의 모자이크이론은 위협범위를 확대할 우려가 있기에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구체적인 위협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익의 관점에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직자들이나 여당에 대한 비판이 공익을 해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 본조가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점이다. 여기서의 공익이라는 용어는 국민주권주의가 확립된 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전체에게 최대한으로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지 과거 나치스하에서의 “나치스의 위신을 심각하게 침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규정이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앞서 검토한 영국의 문서선동죄도 동일한 취지의 악법이었으나 지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는 정당한 표현의 자유로서 민주주의가 확립된 나라들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라는 더 큰 공익을 위해서 공직자들이나 여당에 대한 비판은 허용된다는 점은 공지의 사실이기에 이는 사법당국의 합리적 판단으로 해결되리라고 보인다. 결국 본 조를 나치스의 위신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나 영국의 문서선동죄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서 본조의 문의적 한계를 벗어나서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3. 허위의 통신의 불명확성

① 허위의 명의도 포함하는지 여부

해당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조항을 통한 해석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그 범위를 추론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2조 1에서는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 7에서는 불법정보를 내용을 중심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허위명의를 인터넷통신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인터넷실명제문제로 처벌이 아닌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보면 허위명의를 통신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볼 수 있기에 본 조의 허위통신은 허위 내용의 통신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관련전체법조문상의 취지에도 합치된다.

또한 동 조를 적용한 1심법원의 판결에서 동조를 허위사실 즉 허위의 내용의 통신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²¹⁾ 이는 위의 법률규정과도 전체적으로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1961년 12월에 제정된 전기통신법 제정당시를 들어 “통신명의를 허위”도 포함될 수 있기에 불명확하다고 하나 법률해석은 제정당시의 역사적 해석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객관적 상황에 맞추어 재해석이 가능하다면 합리적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경제학적이거나 일반 법 해석에 비추어도 효율적이라고 보이고 법원이 이러한 제한해석을 통해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고 위의 법규정상 허위통신의 내용으로 제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해석에 의한다면 이 자체는 어느 정도 명확하다고 보인다.

법의 가장 기본적인 객관적 해석은 과거의 상황에 기초한 현실의 상황에 적합한 해석이 원칙이 되어야 그런 의미에서 과거 초기 입법정신에만 근거한다기 보다는 개정된 법과의 상황변화를 전체를 고려한 해석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허위명의를 통신은 배제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② 허위의 의미

표현의 자유라 함은 어느 정도의 이성적 방법에 의하여 진지하게 평가된 사상 등을 외부에

21) 서울중앙법원 2008고단3989호 등 참조.

표출하는 것을 보호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진지한 고려가 결여된 표현을 다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사실의 허위성과 의견의 차이점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표현행위는 사실주장과 의견표현행위로 주장될 수 있다. 표현행위의 보호를 논하기 위해서는 사실주장인지 의견주장인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실주장은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객관적 사실로서 가려질 수 있고 의견표명은 사실주장과는 달리 과정이나 상태를 표현행위자의 입장에서 판단한 결과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가치판단이 전제되는 것이다²²⁾. 다만 현실적으로는 이 구별은 모호한 경우가 많기도 하다. 하지만 사실주장은 그 내용이 인식과 현실과의 일치여부의 문제로서 상당부분 입증의 문제로서 진위가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허위의 사실주장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신용훼손 등의 법적인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의견표현은 존재하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서 평가로서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할 것이고 이는 평가적 태도표명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의견표명은 헌법상 보호되는 것이 원칙인데 개인의 개성의 발현으로서 자기완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진리발견과 사회발전을 위하여 자유토론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옳고 그르다는 평가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데 그 이유는 처음부터 틀린 의견이라고 간주되는 의견은 없고 어느 의견이 더 타당한지는 대비되는 의견을 통해서 비로서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허위의 통신은 의견표명이 아닌 허위의 사실주장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물론 사실과 의견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어느 것이 더 본질적인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야 하고 불명확시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의견의 차이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지만 정권이 허위의 사실로 몰아 처벌할 수 있는 남용과 당해 법률의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사실의 위헌성은 구분되어야 한다. 전자의 경우는 상소심이나 재심제도에 의해서 구제되어야 하고 당해 법률자체가 불명확하기에 위헌인 경우는 헌법재판에 의해서 위헌선언이 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22) 박용상, 명예훼손법, 2008, 현암사, 79면참조.

4. 소결

공익을 해할 목적과 허위사실의 경우는 둘 중 하나라도 요건 충족시 표현의 자유의 제한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본 규정은 좀 더 제한적으로 규정하였기에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아니되고 법관의 독립에 기초하여 어느 정도 여과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 본 조의 의미는 설사 허위사실이라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공익에 해가 되지 아니한다면 처벌할 수없기에 오히려 개인의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사실이기만 하면 처벌되는 것보다도 더 제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확한 규정이기때문에 합헌이라고 보인다.

IV. 과잉금지-처벌의 필요성

1. 목적의 정당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국민전체적 관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불특정 다수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이러한 주목적에 부수하여 인터넷상의 자신의 의견이나 글을 올리는 자에 대하여 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음으로서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려는 자는 자신의 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진실여부를 검토하고 자신의 양심과 사상에 기초하여 공익에 도움이 되는 글을 올리게 함으로서 민주시민의 책임성을 부과하려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만약 허위의 사실을 주식시장에 유포하여 주식시장을 폭락시킨 후 주식을 싸게 사는 경우나 환투기 등의 경우나 국가신인도가 급락함으로써 국민전체가 입을 손해를 입을 경우에 이를 예방하거나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이로 인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인과관계의 입증의 어려움과 그 피해규모의 산출의 어려움 등으로 보아서 단지 민사소송만으로 이러한 허위사실의 유포를 방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들기에 처벌은 이러한 측면에서는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다른 덜 제한적인 처벌규정이나 방지구정이 있다면 그에 의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정권에 대한 비판과정에서의 다소 과장적이고 허위인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본 조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본 조의 적용범위는 경제적인 분야와 일부 정권차원이 아닌 국가의 존립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나 후자의 경우는 국가보안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2. 필요최소한의 원칙위배여부-대안의 존부와 폐지시에도 대안의 마련의 중요성

본 조는 허위표현만으로 구체적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위헌범인 데 자칫 명백하지 않고 현존하지 않는 위협에 대해서 처벌한다면 공권력의 남용 특히 정권의 독재적 언론탄압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실제로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면 그러한 침해범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인다. 즉 덜 제한적인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보인다. 다른 처벌규정이나 행정적 제재, 민사상손해배상, 허위정보 삭제 등으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목적이 달성된다면 그 대안에 응하면 될 것이다.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반드시 처벌은 아니다 무시 내지는 관용도 최선의 방법 하지만 중대한 위협의 경우는 처벌로서 예방적 효과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대안으로서 인터넷에서의 삭제나 정부의 정확한 사실의 제공 등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의문도 들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IMF 사태나 세계적 금융위기위기를 겪으면서 잘못된 루머 등에 의해서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의 지나친 민감한 반응으로 인해 국가적 신인도와 국민들이 주식시장이나 금융적 피해를 경험하기도 하고 현재도 이러한 위협은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규정의 처벌규정은 어느 정도 이러한 위협내지는 매우 큰 사회적 손실을 예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규정을 대체할 대안이 반드시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본 조의 경우 명백하고 현존하는 구체적 위협의 우려가 있는 경우 즉 예외적으로 국가의 신인도가 우려가 되는 상황이나 증권시장에서의 거짓루머로 인한 증권시장의 폭락과 그로 인한 작전세력들의 썩 가격의 주식매집이나 선물거래로 인한 폭리 등의 경우, 허위사실에 기초한 정치적 폭력적 선동의 경우는 이는 헌법재판소가 표방하는 자유민주주의질서에 위배되는 것이기에 적용가능하다고 보인다. 하지만 진실한 사실의 경우 더 이상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저항권의 문제로서 인정될 여지는 있다고 보인다.

허위의 사실을 주식시장에 유포하여 주식시장을 폭락시킨 후 주식을 싸게 사는 경우나 환투기 등의 경우나 국가신인도가 급락함으로써 국민전체가 입을 손해를 입을 경우에 이를 예방하거나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이로 인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인과관계의 입증의 어려움과 그 피해규모의 산출의 어려움 등으로 보아서 단지

민사소송만으로 이러한 허위사실의 유포를 방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들기에 처벌은 이러한 측면에서는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다른 덜 제한적인 처벌규정이나 방지규정이 있다면 그에 의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정권에 대한 비판과정에서의 다소 과장적이고 허위인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본 조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본 조의 적용범위는 경제적인 분야와 일부 정권차원이 아닌 국가의 존립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나 후자의 경우는 국가보안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법률의 위헌성과 집행의 위헌성은 구분해야 한다. 본 조를 과잉적용한 것이 공권력의 남용일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본 조가 당연히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는 법원에 의한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가려질 문제라고 보인다. 물론 집행의 남용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통제규정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보인다.

또한 법적용의 불평등성 즉 강자나 정부기관 등의 허위사실유포는 처벌이 아니되는 문제는 국민들의 고발과 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재정신청제도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기에 당해 사안에서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리고 일부학자들은 미국의 항공기폭파등의 허위신고죄나 우리의 소방서에 거짓신고 등의 경우는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제한적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인다.

V. 인권위의 대응방향 -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강화

1. 인터넷에서 불법정보심의제도의 개선 및 자율규제 원칙 적용

(1) 인권의 주장

-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제1기, 제2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권고안,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방문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통신심의제도 개선 권고 등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심의에 대하여 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하여 민간자율정책기구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 국제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심의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서 권고받은 바와 같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능을 이전하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기검열의 풍토를 초래하는 수사, 구금,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불법정보심의 제도는 불법이라 규제되는 표현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이를 구체화 하고 축소하는 것이 필요함

(2) 소결

위의 주장은 전체적으로 타당한데 다만 자율규제하는 포털 등은 오히려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방통위에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는 어느 정도의 입법적 기준은 헌재판례나 법원판례를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도 여러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2. 익명표현의 자유 보장의 강화

(1) 인권위의 주장

- 2012년 정보통신망법상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어 무효화됨
- 그렇지만 여전히 공직선거법 상 ‘선거게시판 실명제’와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메인이름 실명제’가 시행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일반게시판 실명제와 달리 선거법상 선거게시판 실명제는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지만, 익명표현의 자유가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보호된다는 점은 분명하게 판시하였음
- 익명표현의 자유가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해왔다는 점에서 남은 실명제의 폐지를 고려해야 하며, 정보통신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2) 소결

다만 선거의 경우 자칫 거짓된 주장으로 대선이나 총선의 결과가 결정됨으로서 국민의 선택이 왜곡될 수 있기에 장기적으로는 선거기간의 제한을 풀어서 상시 이에 대한 입증을 강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익명표현의 자유가 발생한 것은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는 시점에서 불가피하게 진실을 말하기 위하여 나온 것이기에 되도록이면 실명으로 표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보인다. 이는 오프라인의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 더 지금보다 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클래스액션과 같은 엄격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표현해야 한다고 보인다.

특히 국가공식홈페이지는 실명제가 폐지되었지만 사적 영역에서는 미국의 경우 사용자약관으로 실명제를 하기도 하기에 이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적인 선택의 문제도 허용되어야 하는지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3. 진실을 말할 자유의 보장 강화

(1) 인권위 주장

-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온라인상의 표현은 제한되어야 함
- 그러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타인의 명예 훼손 표현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 개념을 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함
 - 비록 대법원이 일관되게 ‘사실의 공공성, 목적의 공익성, 진실 믿음의 상당성’ 등 위법성 조각사유를 완화하여 해석하고 있지만, 진실을 말할 자유의 보호가치도 중요하므로 이익형량 과정에서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소결

위의 주장은 전체적으로 타당하고 특히 내부자고발자나 진실을 말하는 자에 대한 국가의 강

력한 보장이 선행되지 아니하면 안된다. 즉 증인보호프로그램의 더 강한 보호와 이에 대한 보상이 같이 가야 한다고 보인다.

4. 정보프라이버시권과 충돌의 경우 합리적 해결방안 확대

-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는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 인권이란 점에서 최대한 보장이 필요함
- 이와 함께 악성댓글 등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개인의 정보프라이버시권도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 양자가 충돌하는 경우, 양자의 이익을 최대한 균형이 맞게 조정하는 이익 형량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봄

5.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제한원칙을 준수

-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제한의 경우 법률유보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온라인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함
- 유엔인권위원회의 일반지침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법률로서만 해야 하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무제한의 재량권 부여를 금지해야 하며, 국제규약이 정하고 있는 목적이나 목표에 합치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공함
-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유로서 국가안보의 경우, 이를 국가안보에 명백하고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정당한 공익에 대한 정보를 억압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인권의 최소한 제한원칙을 위배하는 것임
-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신중한 접근으로 법률유보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6.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삭제조치 및 임시조치제도의 개선

- 인터넷상 악성댓글을 신속하게 차단하려는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공인 등에 대한 정당한 비판마저도 차단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건전한 비판의 경우 일반 국민의 통상적 관념과 법적 상식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의 반박문 게재조치만 우선 허용 정도로 임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봄

VI. 결론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정보국가로서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주체로서 올바른 정보제공에 기초한 사상의 자유시장이론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동조항의 적용은 제한적으로 되어야 하고 만약 이로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즉 국가위기시에 폭력적 선동을 유발하는 정치적 표현이나 국민경제상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등에 다른 수단으로서 허위사실에 대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백하고 구체적 위험이 발생 우려시에만 제한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정치적 성숙성과 이러한 국가위기에 대응할 대안이 마련된다면 그에 의하고 본 조는 역사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가 더 신장되어야 하지만 자유에는 그에 상응하는 자율적인 고려에 근거한 자제와 공익에 해가 될 경우에는 엄중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진정한 전자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여야 할 것이며 본 사건들이 그러한 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보장을 위한 방향 설계 토론



문재태 (동국대 박사)



정보인권 보고서 발간 기념 공동학술대회

정보접근권 확보와 정보문화 향유권의 확대

발표: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토론: 권현영 (광운대 교수)

정보인권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과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I. 들어가는 말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제21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규정에서 도출되며,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로서¹⁾,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월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다²⁾.

표현의 자유는 다른 개별적 기본권에 비해 민주체제에 있어 불가결한 본질적 요소이다³⁾.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민주사회의 기초이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⁴⁾ 표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들보다도 훨씬 강한 보호를 받아왔다.

월드와이드웹(WWW)이 구현한 인터넷은 이용의 편의성으로 인하여 모든 형태의 미디어를 웹으로 통합되도록 하였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 미디어를 자유롭게 전달함으로써 그동안 단순히 소극적인 정보의 소비자들로만 인식되던 이용자들을 적극적인 정보의 생산자로 변모시켰다.

인터넷을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들은 그 속도와 파급력 면에서 이전의 개인 간의 통신에 비해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순수한 개인 간의 통신형태는 여전히

*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1) 헌재 1998.4.30. 95헌가16; 한국헌법학회, 헌법주석서, 법제처, 630~634쪽;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518~519면.

2) 헌재 1991.9.16. 89헌마165.

3) 헌재 1992.11.12. 89헌마88. Stern, Klaus(2006), *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IV/1, C.H.Beck, 2006, §109f.; Isensee/Kirchhof,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IV, C.F.Müller, 2001, §141f.

한편 미국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의는 Sarat, Austin, *Speech and Silence in American Law*, 2010, Cambridge Uni. Press, pp. 143~172; Fraleigh/Tuman,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Marketplace of Ideas*, 2011, Sage 등을 참조. 또한 미국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역사적 전개에 대해서는 박자웅·이지은(역),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간장, 2007 [원문: Lewis, Anthony, *Freedom for the Thought That We Hate: a biography of the First Amendment*, 2007, Basic Books] 을 참조.

4) 헌재 1998.4.30. 95헌가16.

사생활의 비밀의 영역이지만,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블로그(blog)나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발현되는 개인의 의견도 때로는 이전의 언론·출판의 자유에 버금가는 사회적 영향력을 획득하게 되었다⁵⁾.

이와 같이 기술발전에 따른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혁명으로 인하여 인류가 누리게 된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사이버공간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입법적 과제들을 부과하고 있다. 전송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의 통로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사이버공간의 출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⁶⁾.

2003년 유엔이 개최하고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이 주최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²⁾에서는 핵심 원칙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정보사회’(An Information Society for All)를 제시한 바 있다. 정부, 업계 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국제사회가 사람 중심적인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해야 하고, 인프라와 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교육훈련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고,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삶의 질과 문화다양성을 촉진해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인터넷공간의 비대면성과 익명성, 다수간 약한 유대, 신속하고 광역적인 전파성은 사이버 명예훼손과 언어폭력, 개인정보와 지적재산권 침해, 여론의 쓸림과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하기 쉽기 때문에, 정보화 역기능도 정보문화의 중요한 측면이다.

이러한 정보화의 역기능은 대체로 개인정보·인권·지적재산권 침해, 해킹과 바이러스 유포 등 컴퓨터 범죄, 불건전 정보유통(음란물·폭력·잔혹·혐오 유포, 사행심 조장, 사회질서 위반 등), 정보격차⁷⁾ 문제 등이다.

5) 정보화 사회의 진전으로 인한 정보법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문헌으로는 가령 이인호, 디지털시대의 정보법질서와 정보기본권, 법학논문집(중앙대) 제26집 제2호, 2002, 199~257면을 참조.

6) 인터넷의 발전과 법적 문제점에 관해서는 Leutheusser-Schnarrenberger, Sabine(1996), “Urheberrechts am Scheideweg?—von der politischen Verantwortung für Urheber”, 『ZUM』 40, S. 631~636; von Bonin, Andreas/Köster, Oliver(1997), “Internet im Lichte neuer Gesetze”, 『ZUM』 41, S. 821~829; Müller-Hengstenberg, Claus D.(1999), “Überfordert die IT Technologie die Rechtssysteme?”, 『ZUM』 43, S. 214~222; Schippan, Martin(2003), “Urheberrecht goes digital—Das Gesetz zur Regelung des Urheberrechts i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ZUM』 47, S. 378~389; Wagner, Axel-Michael(2004), “Quo vadis, Urheberrecht?”, 『ZUM』 48, S. 723~733 등을 참조.

7) 정보격차를 의미하는 용어로 Digital Divide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7월 미국 상무성 산하

그동안 정부는 정보화를 추진하면서도, 역기능에 대응하는 건전한 정보문화⁸⁾ 구축과 아울러 정보인권의 확립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입법과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인권보고서에서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직도 여전히 정보인권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정보인권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향후 정보인권의 확립과 발전 및 평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이론적·실제적 측면에서 살펴보길 한다.

II. 이론적 측면 : 정보인권의 개념과 규범화에 대한 인식변화의 필요성

1. 정보인권의 개념과 범위

정보사회에서 정보법질서로 분화되는 헌법적 영역에 정보인권이 존재한다. 정보사회에 직면하여 기존 헌법이 어떻게 이러한 정보사회와 조화로운 규범적 체계를 이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일 헌법을 개정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정보사회의 담론을 헌법에 구조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⁹⁾. 여기서 정보인권의 개념 정립 및 유형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 이래로 기본적 인권 보장은 국가의 의무이자 헌법의 최고목표로 인정되어 왔으며 정보사회에서 특히 논의되어야 할 정보인권의 보장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헌법체계적 고찰은 규범현실적으로 당연한 귀결이기 때문이다¹⁰⁾.

NTIA(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 의해 작성된 "Falling Through the Net: A Survey of the Have Nots in Rural and Urban America"로부터이다. 이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를 위한 최초의 보고서로서 정보격차를 새로운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단절로 정의하고 있다. 최두진·김지희, 정보격차패러다임의 전환과 생산적 정보활용방안, 정보격차이슈리포트 vol. 1, no. 2, 2004, 25쪽.

8) 현재 정보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이 정주하는 인터넷공간의 개념과 용어조차 통일되지 않고 있다. 정보문화는 국가정보화기본법(제3조)에 따라 사이버 문화, 인터넷 문화, 디지털 문화 등으로도 불리며, '정보기술의 활용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으로 정의한다.

9) 결국 정보사회가 노정하는 중심적인 헌법 쟁점 중 하나는 이와 관련된 '인권'적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종철, 정보사회의 헌법적 쟁점,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9쪽.

10) 다만, 역사적으로 자유와 권리가 억압되는 독재나 권위주의적 통치과정을 경험한 국가에서 자유와 권

그리하여 지난 1948년 12월 10일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이 이루어질 당시만 해도 인권의 개념과 범위는 전통적인 자유권과 정치적 참정권의 보장에 한정되어 있었고 이러한 인권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이어 그 영역과 범위를 확장하여 왔다. 현재에는 바야흐로 이제 4세대 인권이라 일컬어지는 ‘정보인권’ 혹은 ‘디지털인권’·‘사이버인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근대 시민혁명 이후 기본권 역사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사회적 기본권의 출현과 그에 따른 자유권의 사회권화 현상 및 기본권의 다양한 성격과 기능에 입각한 기본권의 다기능성 내지 기능복합성 같은 것이 ‘제1의 기본권 변혁’이었다면, 정보화로 인한 지금의 정보사회에서의 변화 내용들은 ‘제2의 기본권 변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다 현대학문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기본권의 진화’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권의 진화’에 있어서 핵심은 정보사회에서 ‘기본권의 콘텐츠(Contents) 변화 내지 분화 현상’ 또는 기본권 보호영역(Schutzbereich)의 변화 내지 분화 현상¹¹⁾이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¹⁾.

지식정보사회로의 이행과 전지구적 네트워크의 구성은 보편윤리로서의 인권 개념에 대한 반성적 숙고와 사회적 재구성을 요청하고 있다. 국경이나 민족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의해 폐쇄되었던 아날로그 문명시대와는 달리 전자적 네트워크와 컴퓨터에 의해 물리적 시·공간의 제약이 쉽사리 극복되고 있는 정보사회에서는 더 이상 반인륜적·반문명적 행위가 국지적으로 은밀하게 숨겨지기 힘들다. 그래서 역사와 전통에 뿌리내리고 있는 개별 사회의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보편인권(Universal Human Rights) 개념이 세계적으로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말하자면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사회들이 상호 긴밀히 연결되면서, 이런 다문화적 현상을 수용하는 개방적 인권 개념의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¹²⁾.

리의 성질을 따져볼 겨를도 없이 모든 권리를 기본적 인권이라고 하여 헌법상의 기본권 목록에 추가시켜 이미 민주주의를 실현한 선진국보다 훨씬 호화찬란한 기본권 목록을 만들고는 있지만, 정작 헌법현실에서 그러한 기본권이 헌법상의 권리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정보인에 대한 규범적 정립에 있어서도 보다 구체적인 담론이 필요하다. 정중섭, 기본권의 개념, 금봉어, 2007, 166쪽.

11) 다만, 사이버스페이스와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프라이버시권, 표현의 자유, 매스미디어의 역할 그리고 통신비밀보호 등은 정보사회의 새로운 기본권의 출현이라기보다는 기존의 기본권의 결합이나 변천 등을 통한 이른바 ‘기본권의 진화’라 할 것이다.

이러한 진화적 현상의 핵심에는 ‘기본권의 정보권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며 이는 정보사회 관련 주요 기본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이런 기본권의 정보권적 성격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기능에도 변모가 일어나고 있다. 이시우, 정보사회와 기본권의 변천, 헌법학연구 제8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2002, 91쪽.

보다 기본적인 가치적 측면에서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체계의 근본으로서 자유(freedom)를 기반으로 하는 인권을 상정하고 이러한 자유가 진실(truth)을 통해서만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면서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체계 하에서 시민은 진실하고, 입증가능하며, 이해가능하고, 정확하며, 신뢰성 있으며, 타당한, 적시의 그리고 실질적 접근이 가능한 정보에 대한 권리를 지니는바, 이를 정보인권(citizens' right to information; cyber right in information society; CRI)이라고 정의하는 견해는 경청할 만하다¹³⁾.

아울러 정보인권을 인류의 보편적 인권의 발전단계에 따라 보는 시각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인류의 문명 및 공동체 건설의 핵심은 의사소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정보인권의 핵심이라 보고 있다¹⁴⁾.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전통적인 자유권과 참정권 보장을 강조하던 1세대 인권에서부터, 인권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던 2세대 인권,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1986년의 발전권 등 집합적 권리를 강조하던 3세대 인권을 거쳐, 현대 정보사회 혹은 디지털사회에서 인류 문명발달의 핵심으로서 의사소통의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로서 4세대 인권을 구성하는 정보인권이 주장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보인권은 현재의 개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지식사회의 미래를 보호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전자네트워크 내에서 대중적 영역을 지원 및 강화하며, 동시에 정보화 부문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한다. 이처럼 정보인권에 대해서는 이를 보는 시각과 핵심가치 영역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정보화시대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 내에서 개인 및 사회의 정보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인류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는 주요한 기본권이라는 인식 역시 공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정보인권은 개념 정의에 있어 인류의 보편적 혹은 세계적 인권의 주요한 축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지만,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정보인권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개념정의의 수준을 현재 우리나라 실정법상의 가치체계 및 구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실적 사회구조를 반영하고 그 지침과 기준을 제공하는 헌법상 정보질서의 흐름을

12) 이상훈, 정보화시대의 인권과 보편윤리, IT의 사회·문화적 영향 연구 04-1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7쪽.

13) Józef Oleñki, *The Citizens' Right to Information and the Duties of a Democratic State in Modern IT Environment*, International Statistical Review Vol.71-1, Hoboken, NJ: John Wiley & Sons, Inc., 2003, pp.33~48.

14) See generally Mathias Klang & Andrew Murray, *Human Rights in the Digital Age*, New York, NY: Routledge Cavendish, 2005, pp.11~26.

이해하고 이에 따른 유형화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¹⁵⁾.

2. 정보인권의 규범화·재구조화의 필요성

헌법은 국가법체계에 있어 근본규범이자 최상위법단계라 할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헌법(憲法)이라는 법률용어는 영어의 constitution과 독일어의 *Verfassung*을 번역한 것으로 국제(國制)·헌장(憲章)·국헌(國憲) 등으로 표현되어 왔다. 헌법은 원래 국가의 조직·구조·체제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오늘날 '국가적 공동체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합의를 법규범적인 논리체계로 정립한 국가의 기본법(Grundrecht)'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현실存在(sein)을 규율할 뿐만 아니라, 정치공동체의 바람직한 형태를 제시하는 규범들이므로 법단계(Rechtsstufen)에 있어서 한 국가의 최고법규범으로서 국가적 공동생활에 관한 당위(當爲; sollen)로서의 법규범(Norm)이 된다. 이렇듯 국가의 기본적인 법질서로서 국가법체계에서 최상위의 규범으로서 헌법은 정치적 측면에서 국가구성적·국민합의적·평화유지적·국민통합적 기능을 발휘하는 동시에 당위적 법규범으로서 법질서창설적·기본권보장적·공권력통제적 기능을 보유한다. 요컨대 헌법이라 함은 국가적 활동의 전적인 기초가 되고 하위법령의 입법기준과 해석기준이 되는 국내 최고법규이므로 국가의 과제는 곧 헌법의 과제이기도 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의 경우 「대한민국헌법」이 정보인권에 대하여 어떠한 명문의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지만, 제37조제1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헌법해석상 정보인권은 국민의 정보생활과 관련된 기본권의 조합으로서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을 통해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¹⁶⁾. 그러기에 정보적 활동의 특성에 따라 정보생활의 법률관계를 분류하고 이에 대응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살펴보고 정보인권의 유형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¹⁷⁾.

15) Friedrich Schoch, *Öffentlich-rechtliche Rahmenbedingungen einer Informationsordnung*, VVDStRL 57, Berlin: Walter de Gruyter GmbH, 1998, S. 213f.

16) 정보인권의 개념을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체계의 근본가치로서의 자유(Freedom)를 기반으로 하는 인권을 상징할 때 이러한 자유가 진실(Truth)을 통해서만 달성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체계 하에서 시민은 진실되고 입증가능하며, 이해가능하고 정확하며, 신뢰성 있고 타당하며, 적시의 그리고 실질적 접근이 가능한 정보에 대한 권리의 총체'로 파악하는 견해는 이와 같은 접근의 유용성을 설명해주고 있다. Józef Oleński, *The Citizens' Right to Information and the Duties of a Democratic State in Modern IT Environment*, *International Statistical Review* 71(1), 2003, pp.33~48.

17) 다만, 정보역무의 이용자, 즉 service users만을 보호대상으로서 국민으로 상정하여 접근한다면 정보적

정보사회에서의 전지구적 상호의존성은 인권정책의 수립에 있어 새로운 국면을 야기하는 바¹⁸⁾, 인권옹호의 강화에 대한 구체적·효과적 대응체계의 구축이 어려운 상황에서 종래 시민적·정치적 자유의 전통적인 범주에 추가되는 보장 대상으로서 인권 영역의 확대에 따라 보편적 이면서 시대를 초월하는 인권 관념과는 상이하게도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권정책은 사회경제적인 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역동적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를 제도화하는 법적 규율 역시 유연해야 할 것이다¹⁹⁾.

우리의 경우 종래 정보인권에 대하여는 시민사회에서 인권의 보장과 증진에 이바지해온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정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보사회에서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정보’ 또는 ‘정보사회’ 그리고 ‘인권’에 관한 숙려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데서 실천적 함의를 지닌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리고(and)’라는 접속어는 짧고 간략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의미의 완결성에 있어서는 에티켓이나 예의상 또는 절차에 필요한 그 이상의 것(de rigueur)이 되었다. 예를 들어 규제와 법·권리, 경제와 법·권리 및 문화와 법·권리 등과 같이 새롭게 등장한 정보기술과 법·권리 문제를 보다 함축적 표현으로서 정보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정보사회에서의 다각적이고 다채로운 인간과 기술·권리 그리고 법에 관한 제반문제에 직면할 수 있게 된다²⁰⁾. 어떠한 제한이나 통제도 없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매체라 하겠지만²¹⁾, 기본적 인권 역시 절대적이지 않고 다른

활동에 관한 법률관계의 단면에 치우치는 과오를 낳게 된다.

18) 모름지기 인권(人權, human rights)이라 함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자면, 인권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인간의 권리(Menschenrecht)인 것이고, 인간만이 보유했던 천부적 권리(inherent rights)이며, 법의 관할지역(jurisdiction)이나 그 밖에 민족 또는 국적 등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19) Paolo Garonna & Evren Balta, *Measuring human rights: The challenges for the information society*, Statistical Journal of the 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19(4), Amsterdam: IOS Press, 2002, pp.277~278.

20) Thérèse Murphy, *New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Inc., 2009, p.7.

21) 인터넷에는 PC 통신처럼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이 되는 호스트 컴퓨터도 없고 이를 관리하는 조직도 없으며, 인터넷상의 어떤 컴퓨터 또는 통신망에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통신망 전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실제의 관리와 접속은 세계각지에서 분산해서 행해지고 있다. 다만, 인터넷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1992년 비영리기구로 설립된 ISOC(Internet Society; www.isoc.org)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는 인터넷망의 총괄적 관리기구는 아니다. 한편, 이러한 다대다(多對多) 혹은 쌍방향 의사소통의 매체특성을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서나 공적 질서의 고려 차원에서는 일정한 제약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오·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²²⁾.

정보사회에서의 인권은 디지털화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도 인식하지 못한 채 타인의 수중에 무한대로 수집·축적·처리·가공·이용·제공될 수 있는 새로운 정보환경 나아가 분산된 개인 정보 등을 단일의 기록과일에 의해 언제든지 통합 관리함으로써 실존인격과 분리된 또 하나의 가상인격이 디지털화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정보환경에서 생겨난다²³⁾. 그리하여 타인의 수중에 있는 디지털인격에 의해 실존인격이 규정됨으로써 실존인격에 가해질 위험성이 극도로 높아지는 상황, 특히 정부나 기업에 의해 개인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개인이 정부나 기업 앞에 알몸으로 드러날 수 있는 현재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이 정보인권이다²⁴⁾.

따라서 정보사회의 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인권 보장에 관한 논의는 ‘정보’의 개념이나 분류 또는 주체를 중심으로 독자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이에 관

지나는 인터넷으로 말미암아 정보 수용자는 소비자군에서 소비와 동시에 생산을 담당하는, 즉 생산자와 소비자의 위치가 혼합된 개념으로서 생비자(生費者; prosumer) 지위로 전환되고 정보환경은 Web 2.0시대를 맞이하였다. 지난 2004년 10월 O’eilly Media社의 대표인 Tim O’eilly에 의해 Web 2.0 기술 개념이 소개된 이래 Web 2.0은 특정한 기술을 지칭하는 용어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뛰어넘어 웹이 곧 플랫폼이라는 의미에서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모아 사용자들에게 보여주는 기능만을 제공하였던 기존의 Web 1.0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다룰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정보를 더 쉽게 공유하고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데이터의 소유자나 독점자가 존재하지 않아 누구나 손쉽게 데이터를 생산하고 인터넷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환경이 사용자 참여중심적인 방향으로 변화함에 기인하는 것이다.

22) Ronald Leenes, Bert-Jaap Koops, and Paul De Hert, *Constitutional Rights and New Technologies: A Comparative Study*, Hague: T·M·C·Asser Press, 2008, p.122.

23) 미래에는 기술적 진보가 많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것이며, 그와 동시에 George Orwell의 1984에서 예견된 반이상향이 만들어질 수 있다. 처리능력, 네트워킹 기술은 확실히 향상될 것이고, 인공지능, 기계학습, 데이터 마이닝, 센서 기술 등도 진화할 것이다. 온라인기업들은 이들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온라인 툴을 만들 것이며, 우리는 이들 툴을 사용하면서 단기적인 이익을 얻으면서 장기적으로는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

전 세계의 사용자와 조직들은 위협을 이해하고 현재와 미래의 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정보유출의 위협이 외부와 단절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새로운 사용자 툴과 강력한 웹 서비스는 변화하는 정치 및 기업의 동향과 글로벌화를 배경으로 나올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정보유출의 위협을 완벽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변모하는 더 넓은 환경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다윗 외 (역), 구글은 당신을 알고 있다, 비앤박스, 2009, 326~327쪽 [원문: Greg Conti, *Googling Security: How Much Does Google Know About You?*, Boston, MA; Addison-Wesley, 2008] .

24) 이인호, 정보인권 논의가 시사하는 헌법학적 프레임: 디지털시대에 있어서 정보를 둘러싼 권력과 자유의 긴장과 조화, 법학연구 제3호, 가톨릭대, 2008, 45~49쪽.

한 헌법개정이나 헌법해석론에 관한 방법론적·헌법정책적 합의와 결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독자적인 기본적 인권의 체계와 유형을 정보사회에 대응하는 보편적 인권담론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사실적 측면 : 정보인권 입법화의 현실적 기초로서의 사회적 환경에 대한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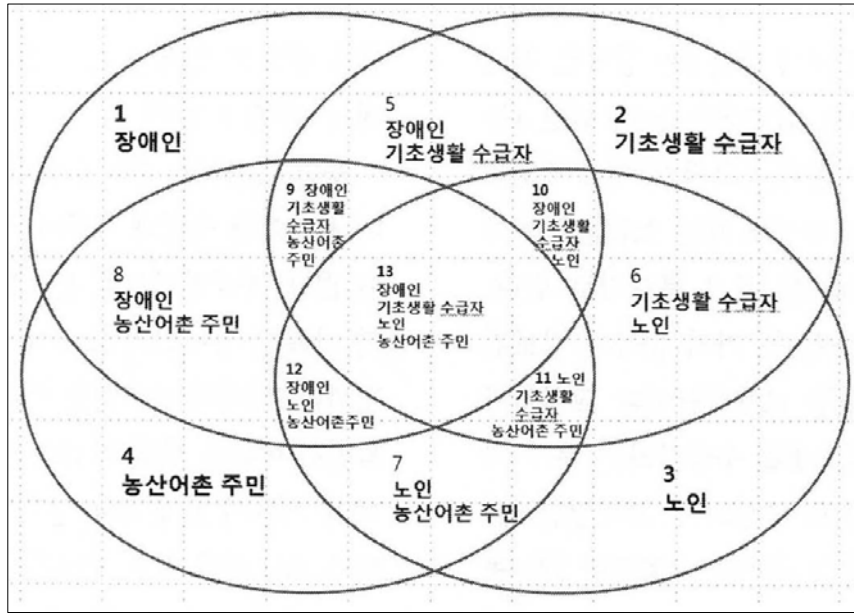
1. 중복된 정보취약 계층의 문제

정보접근권(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은 우선 소극적 측면에서 정보접근을 단하는 제도나 조치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정보방해제거청구권)를 내용으로 하며, 나아가 적극적 측면으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정보공개청구권)와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한 적극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정보격차해소청구권) 등도 포함한다. 이 가운데 특히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내의 학설)과 판례²⁵⁾에 따르면 알 권리의 차원에서 보장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보취약계층을 조사한 결과 정보취약 계층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측면을 모두 가지는 집단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당해 집단은 하부집단의 다양성과 소집단의 고유성이라는 특징을 모두 갖고 있다고 한다. 즉 지난 2009년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9%를 차지하는 등록 장애인은 2,430,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약 20% 정도가 장애수당 수급자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와 더불어 경제적 빈곤을 함께 겪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비 수급가구 중 노인세대는 27.7%이고 장애인세대가 19.4%이다.

현재 농촌 주민의 노인 구성비가 매우 높기도 하며,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농어촌에서 다문화 가정 구성비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문화적 이질성을 가진 다문화 인구집단이라는 특성까지도 아울러 고려하는 인권정책이 필요하며, 이는 정보인권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측면이다.

25) 현재 1991. 5. 13, 90헌마133.



[그림 1] 정보취약계층의 교차집단 분석

〈표 1〉 정보취약계층의 교차집단

구분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농어촌 주민	교차 집단
1	○				장애인
2		○			기초생활수급자
3			○		노인
4				○	농어촌 주민
5	○	○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6		○		○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7			○	○	노인: 농어촌 주민
8	○			○	장애인: 농어촌 주민
*	○		○		장애인: 노인
*		○		○	농어촌 주민: 기초생활 수급자
9	○	○		○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농어촌 주민

구분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농어촌 주민	교차 집단
10	○	○		○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11		○	○	○	노인: 기초생활 수급자: 농어촌 주민
12	○		○	○	장애인: 노인: 농어촌 주민
13	○	○	○	○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농어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인 90년대 초반에는 중앙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역중심의 사고에서 시작된 지역정보센터 구축사업과 농어촌 지역의 컴퓨터 교육사업을 통해 정보격차를 해소하려고 노력하였다.

제2단계인 1990년대 중반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대상의 정보화 지원사업과 기기 보급사업, 그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 이용시설 구축, 인터넷 교육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였다.

〈표 2〉 시기별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적 변화

단계	주요정책
1단계(1990년대 초)	지역정보화(지역정보센터 구축사업) 농어촌 컴퓨터 교육
2단계(1990년대 중반)	정보화 지원사업
3단계(1990년대 말)	인터넷 이용시설, 인터넷 교육지원
4단계(2000년대)	범정부적 종합적 대책마련 시작

향후 정보 격차 해소의 문제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문제에 착안하여 입법화·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정보 접근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고, 둘째, 정보 이용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며, 셋째, 소비적 정보 행위와 생산적 정보 행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경제적, 신체적으로 정보화 시대로부터 소외되었던 이들을 정보화 네트워크 내로 편입시키기 위해 취약 계층에 대한 PC 보급 정책과 정보화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는 한편, 인권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연령별, 지역별로 취약계층에 있는 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 거시적·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²⁶⁾.

2. 국제화 시대 다문화 가정의 증가에 따른 정보인권의 보호방향

(1) 다문화 가정의 의의

다문화(multi-cultural, inter-cultural, cross-cultural)라 함은 일반적으로 성별, 종교, 직업, 계층, 인종 등에 따라 각 사회집단들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미 선진국에서의 다문화개념은 다른 나라로부터의 이민자들이 급증하여 다인종차별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소수민족집단의 사회부적응, 다수-소수민족집단 간의 사회갈등과 분열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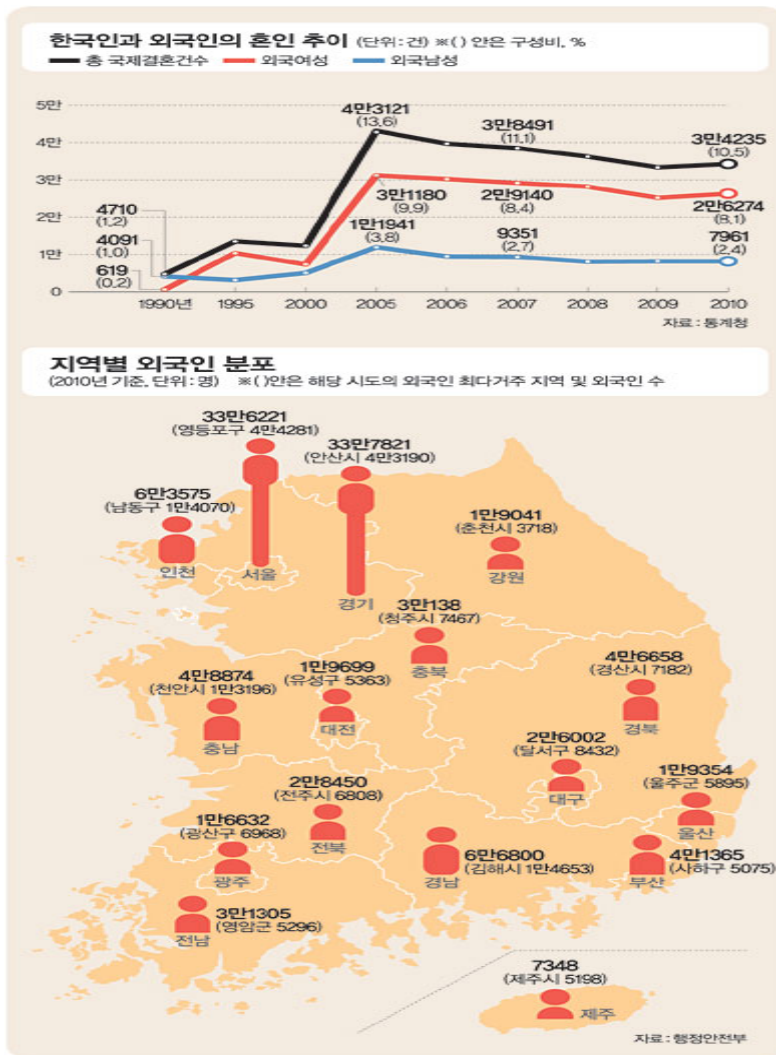
한·중 국교수립 이후 조선족들의 취업이주 및 농촌 총각의 결혼문제와 맞물려 국제결혼이 전체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 필리핀, 태국, 몽골 등으로 외국인 아내의 국적이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베트남과 구소련 등으로 더욱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03년 7월 1일 한·중 양해각서 폐지로 한국·중국 어느 일방국가에서 혼인등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 후, 중국인과의 국제결혼이 더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약 10여년 동안 외국 여성 등의 국내 이주로 인하여 다문화가정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결혼 인구의 약 10% 이상이 외국인과 결혼함으로써(약 100쌍 중 11쌍) 향후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이 양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6) “유선 인터넷 환경에서의 PC 기반의 기존 정보격차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기준 소외계층의 PC 기반 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의 74.0%(전년 대비 1.6%p 향상)로, 추정을 시작한 '04년(45.0%)에 비해 29.0%p가 향상되었다.

또한 소외계층의 가구 PC 보유율 및 인터넷 이용률은 전체국민(82.3%, 78.4%)에 비해 각각 13.6%p, 31.6%p 낮은 수준이지만, 그 격차는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보급 확산에 따라 모바일 격차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모바일 격차지수를 개발·산출한 결과, 소외계층의 모바일 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의 27.8%로, PC 기반 정보화 수준(74%)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외계층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21.7%로 '11년(8.6%)에 비해 증가했으나, 전체 국민 스마트폰 보유율(61.5%)과 비교시 1/3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소외계층의 모바일 정보화 수준이 낮은 이유는 스마트폰 보유율이 낮아 무선 인터넷을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는 능력과 실제 활용하는 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데일리(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104454) 및 정보화진흥원, 2012년도 정보격차 실태조사, 2013.

지난 2013년 말 현재 약 18만 여명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과 노동자들이 다문화 가족의 형태로 한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제화 시대와 더불어 다문화 가족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권 국가의 경우에는 영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영어교육과 관련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 문화 개방이후 상호 문화의 교류로 인하여 국내로 유입되었고,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에서는 주로 취업과 유학 등을 위하여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



[그림 2] 다문화 가정 통계

우리 헌법에서는 전문과 제9조에서 “민족적 단결을 공고화”, “민족문화 창달”이라는 헌법의 민족적 사명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정은 일제의 식민지배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였기에 우리 헌법의 민족주의적 의식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 이러한 순혈주의적 의식은 나와 다른 사람과 인종에 대해 배타적 입장을 취하게 되는 폐단을 낳기도 했다²⁷⁾.

이러한 헌법의 태도에 따라, 현행 헌법에서는 외국인이었다가 내국인이 된 경우나 생래적 내국인과 혼인하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및 이로 인한 가족관계의 형성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일반적인 가족·모성관계의 보호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헌법 제정 당시인 1987년에는 향후 다문화가족의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현행 헌법의 해석에 의하면, 다문화 가족의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는 현행 헌법 제 3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일반조항으로부터 도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초국가적 인구이동이 일상화된 가운데 이미 한국사회 역시 다양한 민족적·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외국인 이주자가 급증하고 점차 정주화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사회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 상이한 민족적·문화적 배경을 지닌 주체들이 혼인관계를 맺고, 한국에 정주하는 현실을 제대로 규율하고 새로운 사회질서를 이루기 위해서는 헌법적 차원에서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는 여전히 순수혈통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의 태도, 국민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인하여 선진국형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향후 헌법개정 시에는 이에 대한 특별한 보호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2) 단행법적 차원에서의 다문화 가족의 의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으로써 목적으로 지난 2008년 9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27) 혼혈인에 대해서는 법·제도적으로 같은 국적을 부여받았지만 사회적 차별과 냉대가 있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사회적 소수자로서 이들에 대한 배려나 정책도 적었음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외국인에 대한 정책, 이주여성에 대한 정책도 결국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성언·최유, 다문화가정도래에 따른 혼혈인 및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지원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63면.

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또한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

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이와 같은 정의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은 통상적으로 결혼이민자 가족 및 외국인 근로자 가족을 통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 새터민 가정의 자녀 등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보다는 매우 협소한 개념으로서 생래적으로 한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 또는 귀화자와 결혼 등의 사유로 후천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입법의 태도는 해외의 입법사례나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 가정이 출현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적합한 용어가 아닌 듯하다.

(3) 정보인권 관점에서 본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특히 농촌지역 출산율을 증가시킴으로써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억제기제로 작용하며, 노동시장 및 국가 간 교류영역에 이중언어 구사 및 다문화적 감수성을 갖춘 유능한 글로벌 인재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향후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는 출신국과 우리사회를 이어 주는 가교(bridge) 역할을 수행할 잠재적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지속되고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사회적으로 소외될 경우 심각한 사회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이 지연되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때에는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 증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역기능을 방지하고 다문화사회로의 성공적인 진입을 위해서는 사회적·법적 기제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정보화 취약계층의 정보화수준이 일반국민에 비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향후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과 일반국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결혼이주자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구현하는데 더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현재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기초교육 위주로 시행되고 있어 생산적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심층적 프로그램으로는 매우 부족하다. 또 여성가족부의 경우 전국 171개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를 통해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필수 교육과정이 아닌 1회성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새로운 정보소외계층인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상자 증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전통혼례식, 말하기대회 등 다문화가족 화합행사 위주로 시행하고 있지만 정보화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의 정보격차의 현상을 방지할 경우 개인적으로는 사회참여와 소득창출의 기회가 제한되고, 사회적으로는 빈부격차 심화 및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사회·경제적인 격차를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인권위원회에서는 다문화 사회의 도래와 이로 인한 정보격차의 문제가 향후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와 갈등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정부의 정보인권 입법현황과 정책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3. 정보미디어 기술의 발전 양상에 대한 적극적 고려

(1)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 융합문제

셋째, 정보인권 중 정보문화와 정보격차의 문제라는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근의 정보미디어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기술의 발전 양상이 인권보호 측면에서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미디어의 융합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영역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방송망에서 통신서비스

를, 통신망에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융합서비스이다. 즉, 3G 모바일 네트워크, 광랜, Wi-Fi 등에서 동영상 등 방송을 수신하는 것과 같이 통신망에서 방송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케이블TV에서 초고속 인터넷 및 인터넷전화, 문자를 쓰는 등 방송망에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들을 모두 융합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는 산업성을 강조하는 통신망과 공공성을 강조하는 방송망을 결합한 단일망을 이용하여 방송서비스와 통신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통합서비스, 즉 디지털 융합미디어서비스를 의미한다. 이처럼 방송망과 통신망을 결합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은 다양한 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특성에 따라 네트워크·단말기 등의 기술 융합, 신문·방송·통신·인터넷 매체 등의 서비스 융합, 통신사업자의 방송사업과 방송사업자의 통신사업 간의 융합, 분리되었던 규제기구의 통합으로 정책과 제도의 융합을 초래한다.

〈표 3〉 기술발전에 따른 미디어 융합 유형

	세부 유형	특징
기술 융합	네트워크의 융합	기술발전에 따른 망의 물리적인 융합
	기기의 융합	멀티미디어
	기술의 융합	디지털 기술
서비스 융합	산업간 서비스의 융합	방송과 통신의 경계영역 서비스
	산업내 서비스의 융합	사업자의 판매전략
시장 융합	사업자의 융합	방송·통신 사업자간 통합
	사업자간 기능적 융합	전략적 제휴
정책·제도 융합	규제정책의 통합	규제제도의 통합 및 기구의 통합
	규제기구의 통합	

이렇게 아날로그 시대에 시작된 미디어기술은 ‘디지털화, 광대역화, 개인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양 산업간의 기술적인 차이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서 산업이 융합되어 여러 분야에서 변화를 이끌어냈다.

지상파 TV 위주의 방송서비스와 양방향 음성통화 위주의 통신 서비스는 이제 영상과 음성의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IPTV 등의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이용자 주도 및 양방향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게 되었고 공익적인 규제를 많이 받았던 방송과, 독점규제를 많이 받던 통신은 이제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라는 규제로 내용이 변화하게 되었다.

(2) 망중립성 문제

망중립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개념이 있으나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그 내용, 유형, 제공사업자, 부착된 단말기기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까지 인터넷 망의 개방성과 중립성은 인터넷의 빠른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 왔다. 망중립성이 보장되어야만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통신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 단말 등을 차별할 수 없게 되며, 이는 해당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되며 인터넷의 혁신을 유발하게 한다.

지난 2011년 12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 바 있으나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mVoIP 차단이나 스마트TV차단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국민들의 정보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유·무선 인터넷 망에서 망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인터넷 상의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기기 등을 차별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망사업자의 서비스 및 트래픽 관리 기준 및 요금수준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망 운영 및 투자비용, 트래픽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3) 정보문화 관점에서의 새로운 저작권 기술에 대한 입법적 대처방안

특히 최근 정보문화와 관련된 인권문제를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토렌트(torrent) 등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토렌트라 함은 개인들 간(peer to peer) 파일 공유 프로그램의 일종으로서 하나의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쪼개 프로그램 사용자끼리 인터넷상에서 직접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송수신되는 파일 용량의 제한이 없다. 개봉 전 영화, 최신 음악, 드라마 등 불법복제물 다운로드를 가능하게 해 주는 씨앗파일(seed file) 공유를 주 목적으로 운영된다. 우선 사용자가 토렌트 소프트웨어를 PC에

설치하고, 다운로드받은 파일(씨앗 파일)을 실행하면,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동시에 파일을 가져올 수 있어 다운로드 속도가 매우 빠를 뿐 아니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²⁸⁾.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토렌트는 본래 빠른 속도로 원하는 파일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식이지만, 별도의 성인인증 및 결제절차가 없어 누구나 손쉽게 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돼 문제가 되고 있다. 토렌트는 웹하드 등 국내 소재 서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음란물 단속 사각지대로 인식돼 왔다.

최근 콘텐츠산업 총연합회는 토렌트 사이트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으며, 모바일을 통해서도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진행 중이다²⁹⁾.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출현할 때마다 새로운 문화의 확산과 인류자산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널리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논쟁이 벌어지게 된다.

정보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한 콘텐츠 이용과 아울러 콘텐츠 제작자와 이용자 간의 적절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매우 중요하다. 향후 정보문화의 발전을 위해 인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자의 저작권 보호와 아울러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권이 보장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사실적·규범적으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IV. 맺는 말

이상에서는 정보화 사회의 발전으로 인한 정보인권의 보호·고양을 위한 정부의 시책과 입법을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정보인권보고서의 내용 중 ‘정보접근권 확보와 정보문

28)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626&docId=1833376&mobile&categoryId=2626>

29)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온라인상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화나 방송드라마, 게임등 각종 불법 저작물들을 대량 유통해온 사이트 운영자 12명과 불법파일을 천건 이상 업로드한 41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10개 토렌트 사이트에는 모두 378만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238만여건의 불법 공유파일이 업로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들 파일의 다운로드 횟수는 7억천백만건으로 저작권 피해규모만 8천66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8개 토렌트 사이트는 불법 저작물을 대량으로 무료제공하면서 광고와 웹하드링크를 통해 7억여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09803>

화향유권의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보인권보고서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해당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정보접근권 및 정보문화 분야와 관련하여 헌법적 관점에서 보완되어야 할 이론적·실제적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우리 사회는 과거 농업사회와 산업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소위 지식정보화로 일컬어지는 혁명적인 사회·문화·경제적인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인터넷, 디지털, 글로벌, 정보와 지식 기반으로 요약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지식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 정보사회의 인터넷공간은 현실공간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현실공간과 인터넷공간은 대면 여부(대면성과 식별성 대 비대면성과 익명성)와 유대의 특성(소수의 강한 연대 대 다수의 약한 연대), 정보의 전파 속도(느림 대 빠름)와 경계선(주권 중심의 폐쇄적 국경선 대 글로벌리즘 중심의 무국경선)에서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개인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 이외에도 공공문제에 대한 관심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인터넷을 통한 공공 쟁점의 관심 증가는 참여증진을 통한 민주적 거버넌스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새로운 기술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과 더불어 당면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의 획득 능력 및 보유 여부가 개인, 조직, 나아가 국가 부의 근원이 되고 있다. 즉, 이러한 경제 환경에서는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구(舊)경제의 자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新)경제의 핵심자원인 정보와 지식이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보화 사회의 발전이 본격화 되면서 이제 우리 사회도 기술, 산업중심의 정보통신정책에서 사람을 생각하는 정보 민주주의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가 되었다. 즉 정보화를 통해 일방적으로 효율성이나 산업의 발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의 설계와 구축에 있어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

향후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인권보고서에서 논의하고 있는 다양한 관점들을 참고하여 정보통신기술의 강국임과 동시에 정보인권분야에서도 한 발 앞서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원한다.

정보접근권 확보와 정보문화향유권의 확대 토론



권헌영 (광운대 교수)



정보인권 보고서 발간 기념 공동학술대회

정보인권 보고서 발간 기념 공동학술대회 종합토론

토론: 박민영 (동국대 교수)

이재삼 (가천대 교수)

윤철한 (경실련)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종합토론



박민영 (동국대 교수)

종합토론



이재삼 (가천대 교수)

종합토론



윤철한 (경실련)

종합토론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보고서 발간 기념 공동학술대회

| 인 쇄 | 2013년 6월

| 발 행 | 2013년 6월

| 발행인 | **현 병 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 주 소 |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B/D (을지로1가 16번지)

| 전 화 | (02) 2125-9759 | F A X | (02) 2125-9733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460-01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